



2017 Vol. 18  
**공인회계사**  
**KACPA Journal**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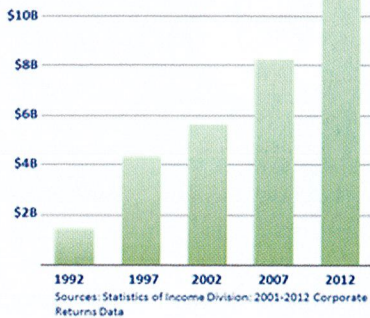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 Have you claimed your R&D Tax Credit?

## \$10.8 Billion

The estimated amount of R&D tax credits that the IRS provided to US businesses in 2012



## PURPOSE OF R&D TAX CREDIT

Designed to encourage businesses in the U.S. to invest in product and process improvement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 position in the marketplace.

## HISTORY OF R&D TAX CREDITS

Enacted by Reagan Administration in 1981.

\$10.8 billion in Federal R&D tax credits in 2012.

15,000 businesses utilizing R&D tax credits in 2012. (C-Corporations only)

R&D Tax Credit is made permanent starting 2016.

R&D Tax Credit can offset AMT (Rev. of \$50M and under)\*.

R&D Tax Credit can offset Payroll Tax for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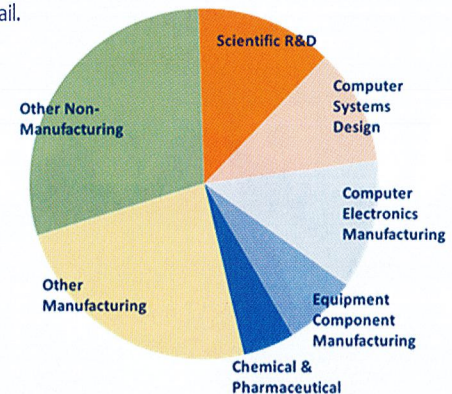
\* Please Contact Apex Advisors for further detail.

## WHO QUALIFIES FOR R&D TAX CREDIT?

MANUFACTURING: 6,200 COMPANIES - \$6.6 BILLION

INFORMATION TECHNOLOGY: 1,500 COMPANIES - \$1.7 BILLION

PROFESSIONAL SERVICES: 5,200 COMPANIES - \$1.1 BILLION



## <CASE STUDIES>

ARCHITECT FIRM (ANNUAL REVENUE \$16 MILLION) - \$240,000 Federal & State R&D Tax Credit

SOFTWARE COMPANY (ANNUAL REVENUE \$71 MILLION) - \$1,091,00 Federal & State R&D Tax Credit

ENGINEERING FIRM (ANNUAL REVENUE \$27 MILLION) - \$462,000 Federal & State R&D Tax Credit

Apex Advisors is a tax advisory firm specializing in various Tax Cred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D Tax Credit. Based in downtown Los Angeles, Apex has successfully helped more than 500 CPA firms find valuable tax credits and incentives for their cl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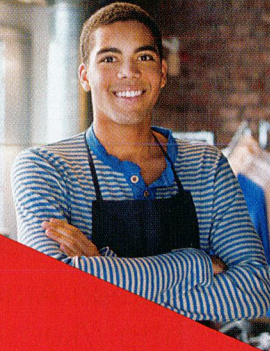
3460 Wilshire Boulevard, Suite 9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213) 487-3333 main. [www.ApexAdvisorsUS.com](http://www.ApexAdvisorsUS.com) [info@ApexAdvisorsUS.com](mailto:info@ApexAdvisorsUS.com)

# KACPA Journal Vol. 18 / 2017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http://kacpa.org>

- 05 **인사말**  
Gary Son 회장
- 08 **급변하는 기술중심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안병찬 공인회계사
- 10 **Interest Tracing Rule**  
Steven Kang 공인회계사
- 12 **Best Practices for CPA Firms in Safeguarding Client Data & Technology**  
James Cha 공인회계사
- 14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정책**  
강호석 공인회계사
- 16 **My view of the IRS Appeals**  
Harold Jung 변호사
- 18 **Valuation**  
정동완 공인회계사
- 20 **Federal Research Tax Credit: New Payroll Tax Credit**  
이창훈 (Charlie Changhoon Lee)
- 22 **2016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세법 변경 사항 No. 1**  
Ann Lee 공인회계사
- 23 **2016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세법 변경 사항 No. 2**  
박(강)소연 공인회계사
- 24 **상속과 증여**  
박유진 변호사
- 26 **Give yourself some credit**  
William Kim 공인회계사
- 28 **리빙 트러스트**  
김민섭 공인회계사
- 30 **사업체의 회전을 분석**  
전석호 공인회계사
- 32 **Cost Segregation Study**  
Philip Son 공인회계사
- 34 **부동산 소유의 형태를 이용한 절세방안**  
Justin Oh 공인회계사
- 36 **IRS Whistleblower Program**  
Pio Kim 변호사
- 38 **현명한 BEPS 대응전략**  
최응환 (Rap Choi) 박사
- 4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Bookkeeping**  
김종화 교수
- 42 **Lease Accounting Rule**  
박홍석 교수
- 44 **여행 경비 공제 전략**  
최준순 공인회계사
- 45 **오후 여섯시의 프리웨이**  
허(김)미경 공인회계사
- 46 **2016 - 2017 KACPA BUSINESS EVENTS**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 48 **KACPA Board of Directors List 2016-2017**
- 49 **제 34대 신임 회장단**
- 50 **KACPA 활동 사진**

발행인 : 게리손  
편집인 : 지니강, 최준순



더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곳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곳  
 비즈니스의 성공을 일궈가는 곳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곳  
 커뮤니티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

지난 34년간 고객과 함께 웃고 성장한 한미은행  
 고객이 꿈꾸는 내일 속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꿈들을 위해 -  
**Bank on Your Dreams**

# 발간사

KACPA 저널, “공인회계사” 를 통해서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협회 회원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는 1982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남가주 교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모범단체라고 자부합니다. 이민 초창기인 1970 ~ 80년대, 이민1세대들이 생활기반을 잡기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때 저희 CPA들과 협회 또한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 후 저희 협회는 협회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세미나 제공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내실을 다져 왔고, 외적으로는, 방송 또는 교민대상 텍스세미나 등을 통한 중요한 세법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미 주류 사회와 교민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역할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CPA 들만을 상대로 준비했었던 저널을 저희 CPA 들뿐만 아니라 교민 여러분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한 “공인회계사” 는 무겁지 않으나 실질적인 정보지로서 작년에 발간을 시작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층에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 주셨습니다. 세무와 회계 관련법의 변화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적 모습과, 정치 또는 경제의 급속한 변화를 대변합니다. 이 저널에 실린 여러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가능한 빠르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존경받는 전문협회가 되기까지, 전직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고와 헌신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협회를 이끌고자 애쓰시는 이사님들의 진심어린 애정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더 커가며 봉사하는 단체로 존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7년, 여러분들 가정과 비즈니스에 원하시는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게리 손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Gary Son President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 Can Complete 12 Monthly Statements in 10 Minutes!

Automate data entry from your financial statements to QuickBooks in minutes, with ScanWriter.

#### ScanWriter converts data from:

- ☑ Bank statements
- ☑ Credit card statements
- ☑ Vendor bills
- ☑ Receipts
- ☑ Checks and more!

#### ScanWriter helps CPA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 ☑ Automatically process 100s of statements in minutes
- ☑ Achieve 100% accuracy before every QB import
- ☑ Complete projects faster with auto population
- ☑ Automate any client workflow with accuracy
- ☑ Reduce time and costs

# 95%

Time Saving



“What people do in a day, we can do in an hour with ScanWriter.”

Randell Toporowski  
Golden Valley Accounting, L.L.C.

**Request a FREE online demo!**

# 전문가는 다르다! CBB Bank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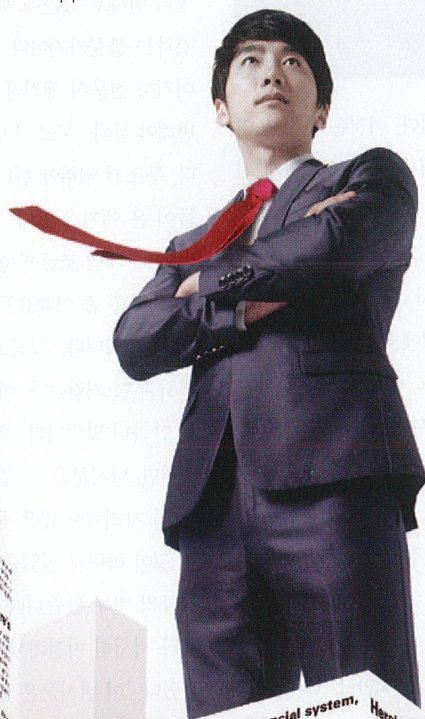
## 비즈니스 전문은행, CBB Bank의 SBA론

모든 SBA론은 비즈니스 전문은행과 함께하십시오.  
비즈니스의 확장이나 인수, 비즈니스의 시작에도,  
CBB Bank는 언제나 도전하는 당신의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생각이 다른 은행, CBB Bank

### SBA 7(A) / SBA 504 Loan Program\*

SBA 승인없이 자체 심사료 신속 대출 (PLP Lender)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 빠른 결정, 빠른 프로세스  
한인 유일의 비즈니스 전문은행으로서, 비즈니스 대출에 최적화  
브로커 리퍼 환영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approval.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SBA 전문상담 (323) 988-3000



**In the last trading session, Buying Back Stock**

**Jeffries Starts Coverage for Biotech's Top Stocks to Buy Now**

**Investment Analysts: Buy Now**

**one conclusion**

**미국중형비즈니스 출몰지역을 제공하는 한인은행 유일의 비즈니스 전문은행**

**The biggest remaining risk in today's financial system, hiding in plain sight**

**★★★★ 금융기관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 최고등급 별 5개 획득**

**Here's when economists expect to see the next U.S. recession**

**Outlook for US economy, wages and hiring**

**Crude oil futures for \$44.63 a barrel, Ear**

**A news service called the Capital Forum described the Iowa case as a "match-u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hedge 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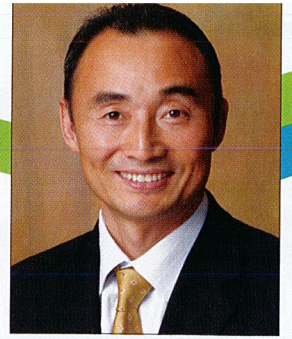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2015년 연속 전 미국 최고 20대 SBA 대출기관 선정**

**164.39 +1.00 (0.61%) SPDR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ETF Trust**

**2015 최고 커뮤니티 은행**

**PLP Lender로서 자체 심사료로 신속 대출**

**Commonwealth Business Bank**



안병찬 공인회계사

# 급변하는 기술중심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알파고가 바둑의 천재 이세돌을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침병을 넘어서, 확실히 변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를 생각해 보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무인자동차(Autopilot Car)가 자동차 사고확률이 더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인 자동차의 운행은 이미 우리곁에 와 있다. 노인들은 말한다. 이제 밤에는 운전하기 싫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신경도 저하되어 운전이 불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우잠을 자고 장거리 출근하는 이들은 졸음 운전이 걱정이다. 과음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음주를 해도 운전하면 안된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운동하다가 발을 다쳐서, 또는 손을 다쳐서 운전할 수 없어서 걱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운전할 수 없는 또는 피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무인자동차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아 드론(Drone)이 직배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직배 시스템도 놀랄 만하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딜리버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많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드론이 이 업무를 대행하려 한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자.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한 에코닷이라는 제품은 더 이상 손을 쓸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말로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알려주고, 뉴스를 물어보면, 뉴스를 읽어준다. 원하는 음악을 얘기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알람은 물론 집에 다양한 전자제품 통제 및 작동까지 가능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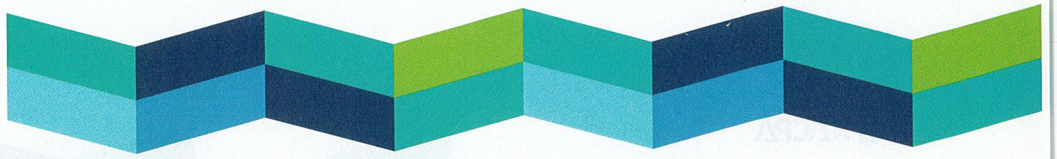
그것도 기능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말이다.

냉장고는 더 이상 음식만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보관소가 아니다. 냉장고는 커다란 정보센터로 변해가고 있다. 냉장고 문에 설치된 화면에서는 각종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의 유통기한은 물론, 날씨, 뉴스, 이메일 등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냉장고 문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다.

잘 되던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안타까움은 이런 기술의 발달과 무관치 않다. 이런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이어져, 이제는 자고나면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우리 생활을 점령하고 있다. 분명히 변하고 있는데,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비즈니스만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나의 비즈니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변해야 한다. 무조건 변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익혀야 한다. 무조건 익혀야 한다. 적지 않은 고객들로 부터 지난 10여년동안 계속해서 들어 온 얘기가 있다. “요즘 경기가 어때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조금씩 좋아져도 시원찮은데, 매년 매상이 줄고 있으니 말예요. 다른 곳은 좀 어때요?” 나는 앵무새 처럼 말해왔다. “그 때난 손님 다시 안돌아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해드렸다. “닭시퐁이 닭시가 잘 안되어서 투덜 거립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참 고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도통 입질을 안하니 말입니다.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고기들이 모두 옮겨간 것 같다고 하지만, 닭시퐁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이 닭시퐁은 이 자리에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닭시퐁이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의 온도는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물 온도에 민감한 물고기들은 이미 물온도가 변함에 따라 서서히 이전해서 이제는 모두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물었다. “이 닭시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리를 옮겨야 한다.”이다. 예전에는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여행이 필수 요소 중 하나였다. 즉, 전국 아니 전세계가 좁다고 다니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처를 뚫는 발품을 파는 것이 사업 성공의 거의 필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 없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많은 정보를 돌아다니지 않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과 비즈니스 달하는 시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축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 없애고, 교통체증으로 짜증나고, 파킹 찾느라고 고생하고, 할인폭품 또는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기 위해





서 발품과는 고생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편리한 사坪물에 길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어떻게 옮겨야하나?”의 질문은 간단치 않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결정에 대한 의지의 크기가 새로운 길에 대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될까? 일반적으로 산전수전 모두 겪은 사업자들은 그동안 참고 견딘 세월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곳에 대한 나의 지식과 정보, 올바른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과정은 빨래를 세탁기에 의존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마음과 같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사坪물을 오픈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있다. 인터넷을 멋있게, 자동차로 따지면 멀세데즈 벤츠처럼 만들어 놓으면 고객이 올까? 이것은 자칫 아무도 없는 사막에 멋진 사坪물을 건설하고 고객을 기다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사坪물을 오픈한다고 해서 고객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坪물 오픈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坪물을 구축하는 비용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인터넷 사坪물 구축보다 그 이후에 들어갈 홍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은 많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의 여성정장을 스포티한 재질로 디자인해서 가격의 문턱을 낮추고, 고객이 두개의 사이즈를 주문해서 맞는 것을 구입하고 다른 하나는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염려하는 부문까지 해결해 주었다. 물의 온도가 변한 것을 감지한 이 회사의 경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문, 라디오, TV를 의존하지 않고, SNS를 적극활용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 회사는 남들은 어렵다는 의류시장에서 넉넉한 마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세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 부응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것이다. 얼른 보기에 아주 기가막힌 조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아킬레스건은 있다. 바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경험부족과 패기만 보이는 신세대의 조합은 자칫 불협화음만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조합보다는 양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수라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조합이 될 수 있고, 이런 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비즈니스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추세는 고무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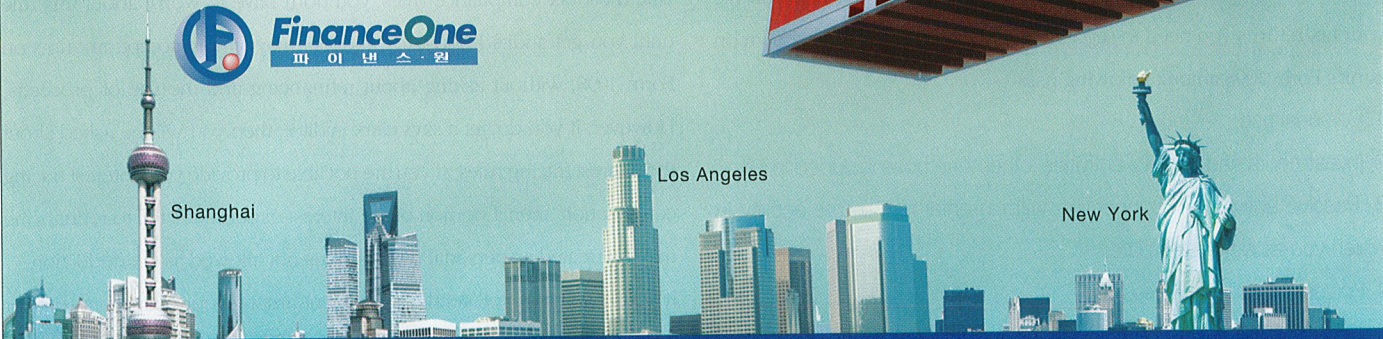
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결정은 대단한 용기이다. 그 용기가 필요할 때인 것이다.

활짝열린 기업자금·파이낸스·원

www.finone.com

## 미국을 넘어 중국으로! 글로벌 금융 파트너, 파이낸스원과 함께 하십시오!

중국과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꾸신다면,  
이제, 파이낸스원과 함께 하십시오!  
LA에서, 뉴욕에서,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도!  
파이낸스원이 성공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Shanghai

Los Ange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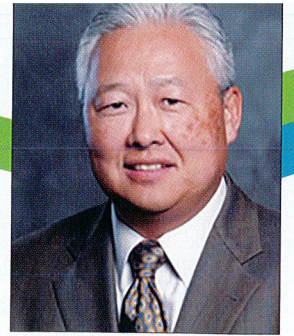
New York

팩토링 / 생산자 주문 금융  
무역 금융 / Bridge Loans

**Shanghai Office** Tel: 86 (21) 52037670  
Suite 1140, No. 968 West Beijing Road, Garden Sq.  
Jin'an District, Shanghai, China 200041

**Los Angeles Office**  
Tel: (213) 430-4888 / Fax: (888) 377-0286  
801 S. Grand Ave., Suite 1000, LA, CA 90017

**New York Office**  
Tel: (212) 629-8688 / Fax: (212) 629-6738  
450 7th Ave., Suite 2601, New York, NY 10123



Steven Y.C. Kang 공인회계사

# Interest Tracing Rule



An apartment is generally refinanced at least once during its ownership cycle. Although many post-2008 refinancing were done mainly to take advantage of historically low interest rate, many also took cash out of their property (assuming adequate loan to

value). For apartment owners, refinancing may create undesirable tax problem, unless the use of refinancing proceeds can be traced to its use.

The interest expense related to an apartment that you have purchased is tax deductible, up to the original purchase amount plus improvements. The interest expense on the loan proceeds, up the original purchase price plus improvements, made on the apartment unit, is fully tax deductible against the rental income.

The interest expense related to cash taken out, above the original purchase price plus improvements, is assumed to be personal in use and thus generally not tax deductible, unless interest tracing is done to substantiate investment or business related uses. For this reason, when you file your tax returns you need to separate out the interest expense shown on bank's Form 1098 among following uses:

1. Personal use,
2. Investments and passive activities (other than those included in (3)),
3. Passive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a rental real estate activity in which you actively participate,
4. Former passive activities, and
5. Trade or business use and expenses for certain low income housing projects.

If you fail to show the uses of loan proceeds, then interest expense, above the loan amount of original purchase amount plus improvements, may be

considered to be personal in nature and hence generally not tax deductible.

The interest tracing rule becomes more complicated if you are in a partnership, LLC or S corporation, where you have made Debt-Financed Distributions ("DFD"). A DFD occurs when a partnership, LLC or S corporation borrows funds and allocates those funds to distributions made to partners, members or shareholders.

If the proceeds were used in a non-passive trade or business activity, the interest expense related to such proceeds must be computed and reported separately in the tax returns. If the proceeds were used in passive activity, then the related interest expense must be computed and reported separately, subject to passive activity rules.

If the proceeds were used for personal purposes, the interest is generally not tax deductible. If you pay down the refinanced loan, then the payoff must first reduce personal use portion. As such over time, the personal use portion of the refinanced loan will decrease, which is a good thing.

If you have a cross collateral arrangement among your apartment units, tracing the use of refinancing proceeds can become nightmarish. However, you only need to do it once. Keeping it updated thereafter would then become an easy task.

Like most tax compliance rule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is rule until you get audited. Most tax auditors may simply accept amounts on Form 1098, without asking about refinancing and the use of proceeds. However, if you do get a savvy tax auditor, then you will be asked about the interest tracing rules. If you are not able to provide your interest tracing computation, then a portion of the interest expense related to refinancing may be treated as personal use and thus not allowed as tax deduction.

If you have cross collateral arrangement among your apartment units or if you have DFD, then you should consult with your tax preparer to make sure that you are properly complying with the reporting requirements on the uses of refinancing proceeds. A little pain now in resolving this issue will save much aggravation down the road.



**Sucessfully claimed several hundred million dollars  
in tax refunds and credits Serviced over a thousand clients**

## **Specializing in Federal and State Tax Credits & Incentives**

- ▶ Federal Work Opportunity Tax Credit
- ▶ Federal Empowerment Zone Tax Credit
-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 Tax Planning for High Income Taxpayers
- ▶ Payroll Tax Credits and Incentives

“.....we may be a small company,  
but Reliant Tax Consulting, obtained  
a huge tax refund for us.....”

- *Manufacturer, Los Angeles, California*

“.....My clients have received significant  
tax benefits from the use of Reliant Tax  
Consulting’s services.....”

- *CPA, Los Angeles, California*

“Enterprise Zone 크레딧에 관해 방대한  
지식으로 대처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Reliant Tax Consulting 회사를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CPA, Los Angeles, California*



**RELIANT**  
TAX CONSULTING, INC.



“Honesty, Integrity & Trus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Charlie Changhoon Lee / ☎ Direct: (310) 345-9870 / ✉ charlie.lee@reliantez.com

28432 Constellation Road, Valencia, CA 91355 / Tel (661) 775-5923 / Fax (661) 775-5996

www.reliantez.com / info@reliantez.com

Santa Clarita • Los Angeles • Fresno



James Cha 공인회계사

# Best Practices for CPA Firms in Safeguarding Client Data & Technology

The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evolving so fast in the recent decade. Utilizing Technology is crucial for running efficient and productive CPA practice.

On the other hand, the sensitive client data held by tax professionals on their computers is attracting cybercriminals who are targeting the tax preparation community, using a variety of tactics in an attempt to steal the identity of taxpayers. Data breaches are increasing in number and scope,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stolen identity information to be used to file tax returns. Tax preparers play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taxpayer data.

## New IRS Requirements

For tax year 2016, the IRS now requires that all tax-related software for professionals follow these requirements.

1. Login require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software is accessed via desktop or the cloud.
2. Password strength - minimum of eight characters with at least one uppercase letter, one lowercase letter, one number and one special character. The IRS also requires that preparers reset their passwords every 90 days.
3. Timeout period - The IRS also requires that applications time out after 30 minutes of user inactivity.

## Laws, regulations, and penalty provisions related to safeguarding taxpayer data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laws, regulations,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which cover the privacy and security of taxpayer data.

The Gramm-Leach-Bliley Act (GLBA): The Safeguards Rule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include return preparers and others who are significantly engaged in providing financial products or services that include preparation and filing of tax returns,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ustomer records and information. Financial institutions must develop, implement, and maintain a "written Information Security Program" that contains administrative, physical, and technical safeguards

that are appropriate.

With the increased attention being paid to identity theft, the GLBA may be used more often to punish businesses that do not take "email security" seriously. The fines can be as high as \$100,000 to the firm for each violation, or up to \$10,000 for the individual, and/or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for each incident. If other federal laws are violated, the fines and penalties can be doub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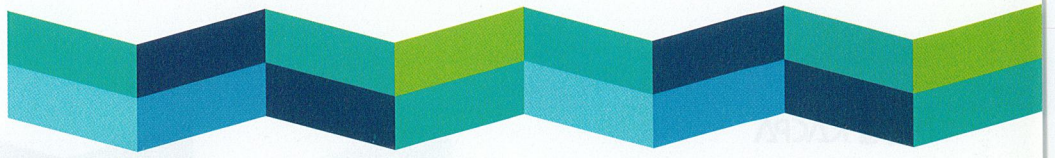
The Financial Privacy Rule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include return preparers, to give their customers privacy notices that expla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practices. In turn, customers have the right to limit some sharing of their information. Also,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companies that receiv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may b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use that information. The Safeguards and Privacy Rules are available at <http://www.ftc.gov>.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 (IRC) § 301 7216,1 imposes criminal penalties on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eparing or providing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tax returns who knowingly or recklessly makes unauthorized disclosures or uses of information furnished to them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an income tax return. A convicted preparer may be fined not more than \$1,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for each violation.

IRC §6713 imposes a civil penalty of \$250 on any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eparing, or providing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returns of tax, or any person who for compensation prepares a return for another person, and who: 1. Discloses any information furnished to him for,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any such return, or 2. Uses any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o prepare, or assist in preparing, any such return.

## Email Encryption -Why important?

Encryption is scrambling sensitive information so that it becomes unreadable to everyone except the intended recipient.



When you send or receive unencrypted emails with or without attached documents, there are 3 hops which hackers or cyber spies can snoop and intercept emails and steal the content - your email server, the recipient's email server, and the recipient's computer. Virtru software is one of the solutions which provides client-side email encryption and data loss protection to keep your encrypted email secure and private from start to finish.

### Other Safeguarding Practices

- Encrypt all hard drives. - A password to log into your computer is not good enough because if your computer is stolen, the hard drive can be removed and plugged into another computer, bypassing the password that you use to log into your computer. This requires special encryption software to be installed on all hard drives that store client data.
- Turn off all computers every night. - Turning off the computer when not in use prevents identity thieves from hacking into your computer and remotely downloading data from your computer.
- Reboot your computer before lunch or appointments. Do not log back in until after you return.
- Use special password protection software to prevent identity thieves from breaking through your passwords.
- Use anti-virus, anti-ransomware, anti-phishing, anti-malware, and secure browsing software on all computers. Anti-virus protection software by

itself is not good enough to defend against all types of e-thre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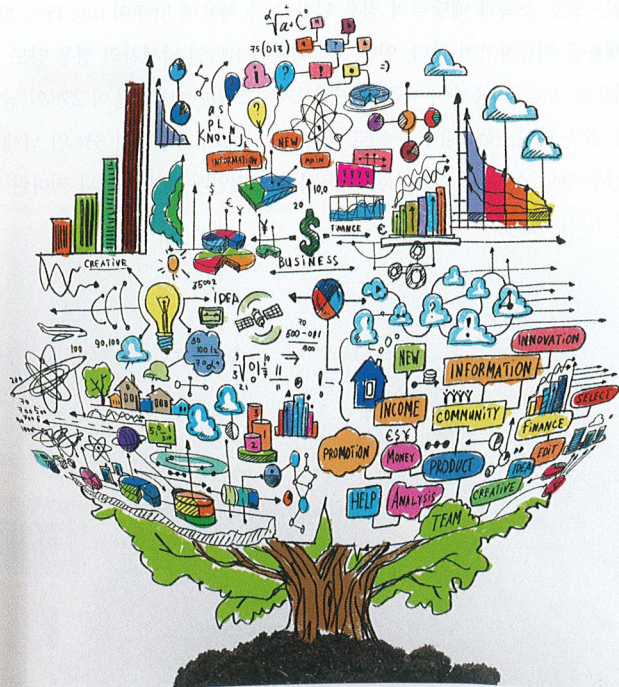
- Implement written "no-click" and computer use policies. Clicking on an email attachment is a common way for identity thieves to install ransomware and malware on your computer and access your data. Require clients to either use a cloud service to upload and download sensitive data such as W-2s, 1099s, etc. or physically mail the data, drop it off in your office.
- Do not use smartphones, tablets, or laptop computers to remotely access your office computer. If you can remotely access sensitive data on your computer, so can identity thie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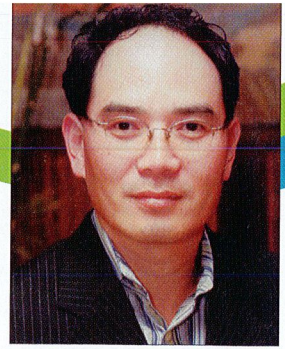
### Other Resources

IRS Pub. 4557, Safeguarding Taxpayer Data, suggests the procedures that tax preparers should implement to protect client data. There is an IRS Publication 4600 that provides a short list of information safeguards and security measures used by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to comply with security rules.

### Final Consideration

Cyber Liability Insurance - It is highly recommended to adopt cyber and privacy policies which cover a business' liability for a data breach in which the firm's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or credit card numbers, is exposed or stolen by a hacker or other criminal who has gained access to the firm's electronic network.





강호석 공인회계사

#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정책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정책은 세금보고 형식을 단순화 시키고, 전체적인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키고 투자와 저축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의 세금 정책 내용을 살펴보자.

## 자세한 세금 개혁안을 살펴보면

첫째, 세율을 12%, 25%, 33%의 3단계로 단순화 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10%에서부터 39.6%까지 7단계로 되어있는 세율을 3가지의 세율로 간소화 시키자는 것이다. 현재의 10%와 15%의 세율은 12%로 바꾸고 25%와 28%의 세율은 25%로 바꾸며 33%와 35% 그리고 39.6%의 세율은 33%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싱글기준 소득금액 \$37,500이하, 부부소득 \$75,000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싱글소득이 \$37,500에서 \$112,500까지 인 경우와 부부소득이 \$75,000에서 \$225,000까지 인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싱글 소득이 \$112,500 이 넘고 부부소득이 \$225,000을 넘는 경우에는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둘째는 양도 소득과 배당금의 경우 일반 소득 세율에 맞추어 0%, 15%,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일반 소득세율이 12%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0%로 적용하여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일반소득세율이 25%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15%로 적용하고 일반소득세율이 33%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하자는 것인데 현행 세법과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다.

셋째로 표준 공제액을 개인 \$15,000과 부부 \$30,0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대신 현재 싱글에게 \$6,300 주는 표준 공제액을 \$15,000으로 올리고 결혼 한 부부에게 \$12,600주는 표준 공제액을 \$30,000로 올리자는 것이다.

넷째는 1인당 인적 공제액 혜택을 없애고 부양 가족에게만 \$500의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모기지 이자와 자선 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별 공제 항목을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우편 엽서 크기의 양식만으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인기를 얻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세금 보고의 양을 줄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는 일반 주식회사의 세율을 15%로 낮추자고 제안하고있다.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주식회사의 세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여덟번째는 주식회사나 사업체가 기계나 설비 투자 같은 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 모두 곧바로 비용처리를 해 주자는 것이다. 현 세법에 의하면 기계나 설비 투자같은 곳에 자본을 투자할 경우 5년, 7년, 15년 같이 몇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여 그 해 비용 처리는 일 부분만 할 수 있다. 또 179 조항 공제라 하여 자본 투자 첫 해에 한해 \$500,000까지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액 제한없이 모두 비용 처리해 주자는 방안이다.



# CRE 100

Centerstone SBA Lending Inc is proud to present our new **CRE 100** program designed specifically to help growing businesses purchase and refinance their owner user commercial property while allowing them to maximize retention of working capital.

Our program provides for up to **100% financing** following eligible purposes: for the

## Real Estate Purchases

Up to 100% of Purchase Price or Appraisal Value  
+ (whichever is lower)

## Real Estate Refinance

- + 100% of Note Balance or Appraised Value (whichever is lower)
- + Up to 25% of total proceeds allowed for other eligible business purposes (including Refinance of other business debt)

- \* This program offers attractive terms and competitive rates for well qualified borrowers.
- \* Program is designed for General Use Properties only.
- \* Special Use Properties (Gas Station, Hotel, Car Wash, etc) are excluded from this program.
- \* Restrictions apply. Please contact your Centerstone representative for further details.



777 S. Figueroa St. Suite 1900 | Los Angeles, CA 90017

##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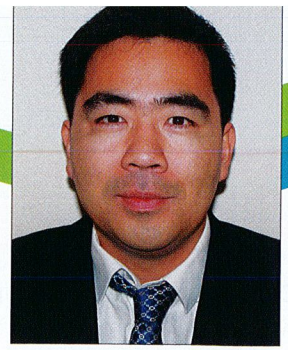
Centerstone SBA Lending is the nation's non-bank SBA licensed lender specializing in the SBA 7(a) program. We are creative, flexible and aggressive in assisting borrowers with their commercial real estate and business capital need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213)805.5220**

# CRE 100

**COMPREHENSIVE FINANCING SOLUTIONS  
FOR COMMERCIAL REAL ESTATE PROFESSIONALS**





Harold Jung 변호사

# My view of the IRS Appeals

Last time I conducted a seminar before KACPA members, I surveyed the CPAs attending the seminar how many of them had an experience resolving their clients' IRS cases through the IRS Appeals ("Appeals"). I was surprised to find out only a few CPAs ever had taken their cases to the IRS Appeals. Based on my experience, both as an insider and outsider of the IRS, I feel there is a lot to gain and little to lose by taking the IRS's adverse audit determinations to Appeals. Of course, if all the IRS auditors are reasonable, there is no need to go to the Appeals but that is not always the case. So I decided to write about the Appeals for those who may not be familiar with it. Here is my personal view of the Appeals. Let's start with the IRS Appeals official mission statement:

"To resolve tax controversies, without litigation, on a basis which is fair and impartial to both the Government and the taxpayer in a manner that will enhance voluntary compliance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integrity and efficiency of th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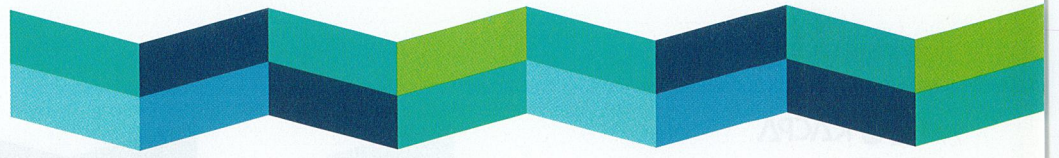
I think the mission statement itself tells us that the Appeals' job is to settle tax cases even though the IRS tries very hard to avoid using the word "settle." The word "settle" is defined as an act of adjusting amount of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out pursuing the matter through a trial. How do you settle cases in a legal context? Only way I know is by compromising. Appeals is designed to be independent of other IRS offices. Even though many, if not most Appeals officers have prior IRS auditor experiences, the Appeals tries very hard to be independent as it believes independence is the most important value of its mission. In fact, the IRS is so serious about this independence business that the Appeals prohibit "ex parte" communications regarding the substance of the case between Appeals officers and the IRS auditors who handled the case, similar to the rule where judges are not allowed to talk to any one side of the litigation without the other side being present. Most of the time, Appeals officers do not have any contact with the auditors. The result of Appeals adjudication, in general is not communicated to the auditor who previously handled the case.

It has been my experience that the Appeals is not "hantongsok" with the IRS auditors, contrary to a popular belief. (Hantongsok in Korean means like kind or literally, out of the same basket.)

When I was working as a revenue agent for the IRS, many revenue agents I worked together disliked the Appeals. Why? Because revenue agents believe that the Appeals give away the cases the revenue agents worked so hard to investigate and develop. Some revenue agents refer Appeals as "Santa Clause" Other revenue agents joke that the only Internal Revenue Code that Appeals Officers know and use in their job is the "code section 5050," implying that the Appeals only sustain 50% of the taxes proposed by the auditors. (By the way, last time I checked and there is no Internal Revenue Section 5050). As a revenue agent, I also did not have a high opinion about the Appeals but my opinion changed as soon after I left the IRS and had a chance to represent a client through Appeals and the U. S. Tax Court. Representing a clien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tax controversy (audit) to the end (the U. S. Tax Court), made me realize that the Appeals has an important and difficult task of reducing so many of the IRS's disputed tax cases before they reach the U. S. Tax Court for an overall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Only then, I learn to respect the process and the Appeals.

Why does the IRS try so hard to reduce the disputed cases? The answer is limited resources. Conducting an audit on taxpayers is a very expensive business for the IRS. Even a simple personal tax return audit(IRS Form 1040) can take more than fifty audit hours from start to finish. Revenue agents who perform the IRS audit are relatively well paid. After about sev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IRS, many revenue agents receive six figure salaries. This is in addition to the generous fringe benefits that most federal employees receive. Some say such generous compens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IRS employees from accepting bribes or otherwise engage in irregularities. Unresolved IRS audit cases, if properly disputed by the taxpayers, ultimately reach the U. S. Tax Court for adjudication. There, the IRS attorneys have to prosecute the cases, regardless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s. It gets even more expensive for the IRS.





Another reason the IRS tries to limit cases in the U. S. Tax Court is to avoid adverse Tax Court decisions for the IRS. In the U. S. legal system, tried court cases may provide precedential value. Precedent is a rule set in a prior legal case that is either binding on or persuasive for a court to follow. Judges and government agencies usually accept prior court cases as a rule of law where the statutes are not black and white and apply it to the case adjudications that follow. Certainly taxpayers will use the precedents that can be interpreted in the taxpayers favor and that can be problematic for the IRS. So the IRS has to pay close attention to every Tax Court cases as each case has a potential to become a bad precedent for the IRS. These two reasons give an insurmountable incentive for the Appeals to settle the cases, often at a great benefit for the taxpayers.

Despite all the pros of Appeals, some people avoid Appeals based on a mistaken belief that the appeals process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It is not, Appeals was meant to serve as an informal administrative forum for any taxpayer who disagrees with an IRS determination. Taxpayer need not be represented by an attorney to appeal a case, even in the U. S. Tax Court. There is no difficult procedures to follow. An informal protest letter is all it takes to begin the process and there is usually nothing else for the taxpayers to do until the Appeals conference. Appeals conference is very informal meeting between the taxpayer (and/or representatives) and the Appeals officer and usually takes place at the Appeals office. Nowadays, Appeals is trying to do more of telephonic conferences for many of its

cases to save money but you can always request a face to face meeting, which I believe it more effective.

Some people also avoid Appeals to terminate the IRS's intrusive investigation but this is also based on a mistaken belief. Appeals can only adjudicate the issues raised by the IRS auditors. Appeals cannot and does not expand the scope of the case or raise different issues altogether. In another words, things can only get better, not worse at the Appeals.

I spent so much time talking all the upsides to taking cases to Appeals but I should mention some downsides to the Appeals process. The biggest downside is the processing time. From the time taxpayers request Appeals conference, it can sometimes take more than six months before a conference can be scheduled with the Appeals. In some cases, it can take more than a year. So if you have an anxious client who wants to be over and done with the IRS, then Appeals may not be for the client. It certainly helps to have an expectation that any audit could take years to resolve. Adopting a famous Korean saying that it is better to receive the punishment early (because of the anxiety) does not always work in the taxpayers' favor in an IRS audit.

If there is one thing I learned from my thirteen years of experience at the IRS is this: 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The Appeals is a gift from the U. S. Congress to its citizens and the Korean American taxpayers should not shy away from exercising the rights to protest IRS's unreasonable audit determinations.





정동완 공인회계사

# 기업가치평가 (Valuation)

Business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Business의 가치는 상승하기도 또는 하락하기도 하고, 불과 1년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기도 한다. 이런 사업환경 안에서, 특히 Finance의 영역에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Business의 적정가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가치평가를 가장 중시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다. 특히 기업 인수 시장이 활성화 된 이후, 가치평가 방법을 이해하여야 주요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회사의 매매, 자본 조달은 물론, 상속이나 법적분쟁과정에서도 회사의 가치평가는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회사의 가치는 마켓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몇년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Business는 Google, Yahoo, Cisco와 같은 SaaS (Software-as-a-service) 회사들이었다. 그 이전에는 온라인 광고 또는 블로그 플랫폼 회사들이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렇듯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Finance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Business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필수적이 된다.

Business Owner의 경우 새로운 투자옵션이 생겼을 때, 자신의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Share를 주어야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회사의 적정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은행에서 Loan을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를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를 먼저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던 Business를 팔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회사의 Value를 평가받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Business를 팔기 위한 첫번째 스텝이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반대로 가치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Business의 취약점을 향상, 개선시킨다면, 우리는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고 Business를 팔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평가(Valuation)는 Business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Process 와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적절히 평가된 Business의 가치는 시장에서 Business와 관련된 거래, 즉 투자 또는 회사 매각시에 사용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기업가치평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나 매각시 가격결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회사운영 방향을 제시 하여 줌으로써 내부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흔히 기업의 가치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면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기법들의 종합 세트라고 한다. 통계적, 재무적, 회계적 지식의 활용은 물론, 재무정보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현실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과 경험에 기초한 정교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을 다양하고 서로 다른 Business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각 또는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Business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Business Owner라면, 경험이 있는 CPA에게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몇 해 전 TV에서 은행의 임원이 패널로 나와서 하는 경제토론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 그의 첫 마디는 바로 "대출은 담보가치가 아닌 미래 현금흐름 가치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것은 변화된 금융기관의 경영방향을 말해 주는 것 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회사 Loan을 받거나 인수합병 등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가치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기업가치란 결국 회사가 보유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하는 수익력을 기초로 한 가치를 말한다. 본래 회사의 가치란 보유의 목적과 동기가 투자자에 따라 다양하므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자자의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적 가치관을 떠나 완전히 객관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Fair Value)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영미의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대체로 (1)자산가치법, (2)수익가치법, 그리고 (3)시장가치법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자산가치법 (Asset-Based Approach)

회사의 가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순자산 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자산가치법'이라 한다. 다만 평가자의 관점과 평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자산가액이 산출될 수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회사의 브랜드, Know-How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평가액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 2. 수익가치법 (Income Approach)

수익가치란 회사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적절한 할인율(이자율)로 현재화 (Present Value)한 개념이다. 회사의 가치는 쉽게 말해,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수익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미래 수익과 Cash Flow의 추정은 예측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실무상 어려움도 가장 크다. 또한 기업가치는  $PV=C/(r)$ 로 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숫자나 수식으로 간단히 치환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맞아도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영미권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도 활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 3. 시장가치법 (Market Comparable Transactions Approach)

회사와 유사한 비교대상 회사들의 실제 주식거래가격을 참고로 회사가치를 구할 수도 있다. 동종산업에서 최근 성사된 M&A 거래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치를 비교 산출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이나 M&A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장회사 중에서 유사기업을 선정하는 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고, 신생업종 등에서는 비교 대상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회사가치평가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이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형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모형을 재편성할 필요도 있다. 결국 회사의 가치는 비즈니스의 성격이나 가치 창출의 원천,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하에서 만이 Loan이나 인수합병 등에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창훈

(Charlie Changhoon Lee)

Reliant Tax Consulting, Inc.

# Federal Research Tax Credit: New Payroll Tax Credit



Federal Research (“R&D”) Income Tax Credit은 1981년, 관련 법률 시행 후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받아 온 tax credit 프로그램이다. 처음 시작 당시 기존 및 신규 기업 (start-up)들의 희망과는 달리 수익창출을 하는 기존 기업들만 즐길수 있는 혜택이 되어 버렸다.

신규 기업들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 상당한 연구 개발 비용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R&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음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이유로 수여된 R&D tax credit을 미래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른말로 수여된 R&D tax credit 은 추후 발생된 영업 이익에서 먼저 순 영업 손실 (Net Operating Loss)을 차감한 후,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는 연도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이런 현실로 인해 R&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됨으로서, 신규 기업들에게는 그냥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것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신규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들려왔다.

##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 (“PATH”) Act of 2015

2015년 12월18일 통과된 PATH Act가 그것이다. 먼저 이 법안은 그동안 매 2년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법안으로 연장되던 R&D tax credit을 영구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1981년 시작된 R&D tax credit에 처음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payroll tax (6.2% FICA taxes)에 사용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신규 기업들도 R&D tax credit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payroll tax credi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 되어져야 한다.

### Qualified Small Business

사업체의 회계연도 매출액 \$5백만 미만(gross receipt less than \$5 million for the taxable year)이고, Payroll tax 신청하는 회계연도 이전 5회계연도 중

\$0 매출 연도가 한연도라도 있어야 함 (did not have gross receipts in any tax year preceding the five-tax-year period that ends with the tax year of the election).

어떤 payroll tax에 사용이 가능한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신청된 payroll tax credit을 I.R.C. Section 3111(a) 에서 명시한 FICA tax, 즉 고용주 부담의 고용 임금 6.2%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나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tax 에 사용이 가능하다.

얼마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

매년 payroll tax credit의 혜택은 \$250,000미만이다. 만약 FICA와 OASDI에 사용하고 남은 tax credit이 있다면 다음년도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election을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

Payroll tax credit의 처음 사용절차는 이렇다. 먼저 2016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2016년 세금보고시 전체 산출된 R&D tax credit을 보고하며, 이때 산출된 R&D tax credit 액수 중 payroll tax credit으로 사용 여부와 사용 액수를 election을 통하여 IRS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가 완료된 그 다음 분기부터 payroll tax credit사용이 가능하여 진다.

예) 2016년 세금 보고를 2017년 3월15일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분기인 2017년 2분기 부터 payroll tax credit 사용이 가능하다.

어떻게 IRS 에 보고가 되는가?

a.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된 R&D tax credit은 소득세금보고시 기재된 IRS Form 6765을 첨부하여 IRS에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2016년부터 IRS Form 6765에 Section D “Qualified Small Business Payroll Tax Election and Payroll Tax Credit”이 추가가 되어 payroll tax election 신청하도록 변경 되었다.

b. 새로이 만들어진 IRS Form 8974 “Qualified Small Business Payroll Tax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에, 소득세금보고시 Form 6765에 보고된 payroll tax election information을 옮겨 기재하고, 사용 가능한 payroll tax credit 을 산출 Line 12에 기재하며

c. IRS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Line 11에 IRS Form 8974 (Line 12)에 산출된 payroll tax 금액을 기재한 후 payroll tax

액수를 산출하여 보고한다.

d. IRS Form 941 보고서 IRS Form 8974가 항상 함께 첨부 되어야 함도 잊어서는 안된다.

**Insight**

	Scenario 1	Scenario 2
Gross Receipt	\$3,000,000	\$3,000,000
Net Income	0	200,000
Income Tax	0	60,000
Wage/Salary Expense	2,000,000	2,000,000
R&D Tax Credit	150,000	150,000
Current Year Tax Credit Used	0	60,000
Credit Amount Available For The Payroll Tax Election	150,000	90,000

**Election시 주의점은?**

R&D tax credit election rule에 따라 먼저 창출된 R&D tax credit은 by default 그해 소득세 차감을 먼저 하여야 하며, 그 후 남은 tax credit은 1년 carryback 을 통하여 전년도 소득세 환불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남은 credit을 payroll tax credit으로 election 할 수 있다.

**Scenario 1**

Start-up small business중 소득은 없는 연구 개발 회사일 경우: 매년 \$250,000 까지 payroll tax credit election 을 통하여 FICA tax 를 줄일 수 있다.

**Scenario 2**

Start-up small business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연구 개발 회사일 경우: R&D income tax credit과 election을 통한 payroll tax credit으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전 연도에서 이월되는 tax credit에 따라서, 금년도 R&D tax credit의 payroll tax credit 전환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도 고려할 사항이다.

**결론**

R&D tax credit를 통한 payroll tax 혜택이 가능하여졌다. 하지만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R&D tax credit 신청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규제조건들이다. 이런 규제들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R&D tax credit을 한번도 신청해보지 않은 start-up small business 일수록 경험있는 전문인들과 먼저 자문을 받고 진행 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또한 자주 변경되는 R&D tax credit 규정에 관하여도 전문가와 연락하여 업데이트하기를 권하며, 끝으로 이 기사를 읽고 혜택을 받는 start-up small business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Overcome challenges together

You make a difference when you do things together

**PACIFICCITYBANK**

Member FDIC  
EQUAL OPPORTUNITY LENDER



Ann Lee 공인회계사

# 2016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세법 변경 사항 No.1

2017년 새해와 함께 시작된 2016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간추려 본다.

##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개인, 사업, 해외계좌 (FBAR) 보고, 또한 고용주 급여서식 (W-2)과 독립계약자 (1099-MISC) 보고 마감일이 일부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변경되는 마감일과 보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Form	1040	1065	1120S	1120	
				Federal	California
Due Date	4/18/2017	3/15/2017	3/15/2017	4/18/2017	4/18/2017
Ext Due	10/15/2017	9/15/2017	9/15/2017	9/15/2017	10/16/2017
Filing Penalty	25%-100%	\$195/MO/PTR	\$195/M/P	25% X TAX	5%-25% X TAX

Form	114	W-2/W-3		1099-MISC (Box 7)	
		Federal	California	Federal	California
Due Date	4/15/2014	1/31/2017	1/31/2017	1/31/2017	1/31/2017
Ext Due	10/15/2017	N/A	N/A	N/A	N/A
Filing Penalty	\$10K-\$100K	\$50-\$260/RETURN	\$50/RETURN	\$50-\$260/	\$30-\$100/RETURN

## 환불지연

2015년 12월 18일에 제정된 미국인 세금인상 방지법 (PATH 법)에 따라, 저소득 보조금과 환불가능한 추가 자녀 세액 공제가 요구되는 환불은 일찍 보고 되었다 하더라도 2월15일 이후로 지연된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개인공제, 자녀세액공제, 저소득보조, 자녀를 돌보는 비용 및 세대주의 보고자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들 공제나 혜택에 관계된 세금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녀의 양육권이 있는 부모란 보고 연도 동안 자녀와 더 많이 살았던 부모로 규정 되어졌다. 만일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이 지냈으므로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게 될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식 833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진술서에 써인하고, 그 서식을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신의 보고서에 함께 첨부함으로써 해당 자녀를 보고 연도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세금보고 제외 수입

세금보고에서 제외되는 수입으로는 ALISO CANYON 지역의 가스 누출로 인

해 발생한 이사 또는 청소 비용등의 상환금; 올림픽에서 탄 메달이나 상으로 받은 현금;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백만불까지의 주거주택 부채탕감액; 인-홈 케어 제공자기 받은 수입; 부당한 투옥으로 받은 손해 배상이나 금전적 보상금; 또한 \$102,100까지의 국외 소득이 해당 된다.

## 에너지 세액공제

PATH법에 의해 비상업 에너지 크레딧이 연장되었으며, 태양열 재산에 관한 에너지 크레딧은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해당재산으로 연장되었으며, 2016년 보고와, 2017년 1월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재산에대해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2020년 해당 재산에는 26%, 또한 2021년 해당 재산에는 22%의 하향 조정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갱신 (ITIN)

지난 3년 동안 연방 세금 보고서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모든 ITIN은 2017년 1월 1일부터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2013년 이전에 발급된 모든 ITIN은 금년부터 만료가 시작되며 중간 숫자가 78 및 79 (예: 9XX-78-XXX)로 된것부터 우선 만료된다.

모든 만료된 ITIN은 먼저 갱신한 후에 미국 세금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ITIN 보유자들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 판매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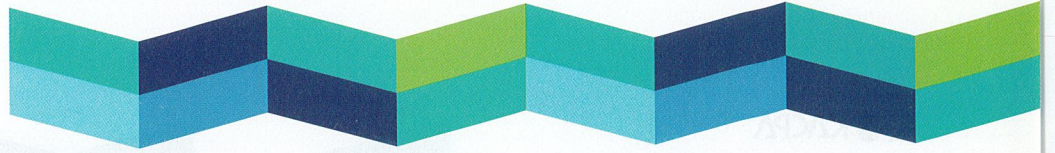
2017년에 LA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채택된 주민발의안 30, 학교 및 지역 공공 안전 보호안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잠정적으로 인상되었던 0.25%의 판매세 폐지로, 2017년 1월1일부터 0.25% 하락된 8.75%의 판매세를 지불하게된다.

이와 같이 2017년은 줄어든 판매세로 시작되나, 2016년 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판매세 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더한 추가 인상 또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오는 4월 DOWNEY지역 주민들의 판매세는 1/2센트 인상되며, LYNWOOD나 SANTA MONICA시의 판매세는 1불당 1센트가 인상 될 예정이다. 7월에는 채택된 주민발의안 M으로 인해 LA지역 전 주민들은 1/2센트 인상된 판매세를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변화로써 LONG BEACH지역 주민들은 지난 6월에 채택된 지역 발의안의 실행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9.75%로 인상된 판매세를 지불하게된다. 또한 LA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를 돕기 위한 1/4센트 세금을 위해 승인된 3월7일 투표 결과에 따른 변화 또한 예상되고 있다.



박(강)소연 공인회계사



# 2016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세법 변경 사항 No.2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법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 통과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2017년 초에도 세법 변경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나 세율 변경 등의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현재 확정된 세법을 점검하고 현 세법의 체제하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 2016년 Tax Season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세법 변경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1. Business Tax : 2016년 세금보고에 반영할 수 있는 몇가지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 Research & Development Cost : 설립 5년미만의 신생회사에 한해, 2016년 한해동안 회사의 총매출이 5백만불 미만이었다면 회사에서 발생한 R&D Cost를 종전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 대신 연간 최대 \$250,000까지 Payroll Tax를 상쇄해주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D에 투자가 많은 신생회사가 소득세를 공제받는 것보다는 회사 운영을 위해 소득이 없던 내야 하는 Payroll Tax를 상쇄해주는 혜택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Work Opportunity Credit : 27주 이상 실업상태였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첫째 월급 중 \$6,000의 40%(up to \$2,400)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California New Employment Credit : 고용전 6개월간 실업 상태였거나 전년도 세금보고에서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은 경우 혹은, 고용전 12개월 이내에 전역한 군인 등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해당 구역에 살고 있을 경우 총 급여의 35%까지 주정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Individual Tax : 2016년과 2017년 세법 변경사항 및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일한 소득(Foreign income exclusion)에 대해 2017년에 최대 \$102,100(\$101,300 for 2016)까지 소득에서 면제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거비용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 최대 면제금액이 \$5,490,000(\$5,450,000 for 2016)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대 세율은 40%로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되는 항목입니다.

3) Capital Gain : Dividend나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 Top rate은 20%(2017년의 경우, 기혼자의 Taxable income이 \$470,700이상, 미혼자는 \$418,400이상), 그 미만의 taxable income은 15%의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본인의 세율이 10%-15%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되어 지켜볼 만 합니다.

4) 가치가 상승한 주식 기부 : 1년 이상 소유한 주식을 Charity에 기부할 경우,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지 않고 기부당시의 시가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한 주식은 주식자제로 기부하는 것이 좋고, 가치가 낮아진 주식은 매각하여 생긴 현금으로 기부하고 가치 하락분만큼은 Capital loss를 claim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1년 이상 소유하신 주식이어야 합니다.





박유진 변호사

## 상속과 증여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inheritance)과 증여(gift)가 쓰인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고 있다. 재산을 맺지않고 준다는 점, 즉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르다. 증여 (gift)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속 (inheritance)은 사망 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인 것이다.

2017년도 현재 증여세 면제액(lifetime gift tax exemption)과 유산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은 동일하게 549만불(\$5.49 Million)이다. 즉, 살아 있으면서 자녀에게 증여세 걱정없이 평생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490,000이고 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상속세 걱정없이 남길 수 있는 금액 또한 \$5,490,000이기에 결국 살아서 증여하나 사망한 후 상속하나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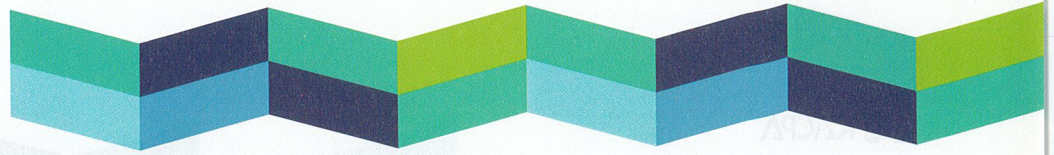
세금 걱정없는 면제액은 \$5,490,000이라는 것이다. 부부의 면제액을 합하면 \$10,980,000이 된다. 반면 일년에 증여세 보고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 (annual exclusion)은 2017년도 현재 \$14,000이다. 따라서 \$14,000 이상 증여시,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나 \$5,490,000미만의 증여시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다.

손님들과 유산 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코자 하는 손님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즉,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증여”를 하고도 자녀에게는 명의만 이전을 뿐, 증여된 재산이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즉,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증여는 말 그대로 “선물”이다. 증여 후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역으로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받고도 효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증여받은 재산의 수입을 부모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증여한 뒤의 다른 변수들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재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 사업 실패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려서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 상속법정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 등등 오히려 이른 증여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되면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더 많이내게 된다. 증여 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구입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와 달리 상속 받은 시점의 시장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된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에 20만불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사망 후 막바로 자녀가 70만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매매차익인 50만불(70만불과 20만불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올바른 상속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생전신탁 즉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등 유산상속계획을 설립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포함





한 미국에서는 망자가 일정한 금액이상(캘리포니아의 경우 시장가 15만불이상)의 재산에 대해 유산상속계획(리빙트러스트나 수혜자 설정)을 안 해 놓았다면 상속법원 (Probate)을 거쳐서 수혜자들이 재산을 받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을 했을지라도 고인이 남긴 재산이 시장가 15만불이 넘게 되면 결국 상속법원을 거쳐 수혜자들이 재산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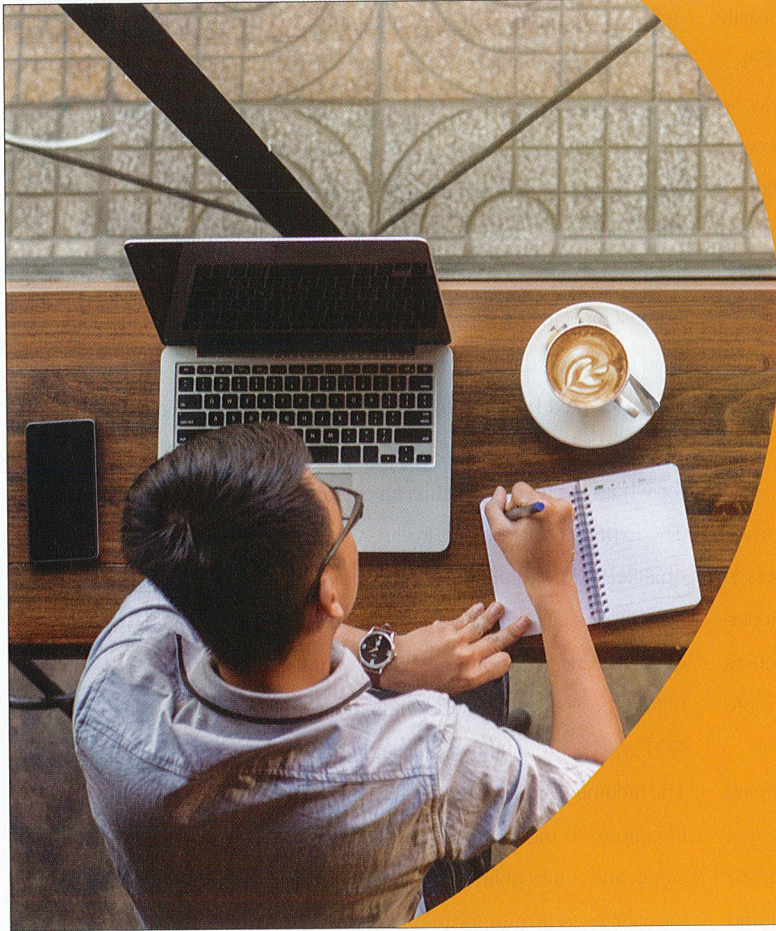
유산상속계획은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놓기에 땅위의 절차(above the ground)가 되나, 상속법원은 사망한 후 이루어지는 땅 아래서의 절차(under the ground)라고 비유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산상속계획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반면 상속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고인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대개의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는 재산 비율을 각각 달리하고 싶은 경우, 의붓자녀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자녀가 없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등은 유산상속계획으로 이미 정해놓지 않으면 본인의 원하는 바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상속법원 절차는 더 까다롭고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한 1~2년정도로 훨씬 길기 때문에 변호사 비와 수수료 등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

따라서 건강할 시 유산상속 계획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재산규모와 가족사항, 또한 원하는 수혜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고 미리

유산상속계획을 올바르게 세워서 미리 교통정리를 해놓아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증여” 또한 좋은 유산상속계획의 일부로 잘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년에 증여세 보고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 면제액 (Annual Exclusion ; 2017년도 현재 \$14,000)을 잘 활용하면 많은 금액의 재산을 세금 걱정없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줄여서 ILIT)이 있다. 이는 취소불가능 생전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한 뒤, 연간 증여면제액 (Annual Exclusion)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장치이다. 신탁설립자 (Trustor)가 생전에 납입한 “보험납입료가 신탁으로 온전히 증여됐다” 라고 간주되기에 신탁설립자의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남긴 재산 (Estate)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유산상속세 또한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에 대해 수혜자가 소득세 (income tax)를 물지 않기에, 삼중으로 세금을 피하면서 수혜자에게 재산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가치가 많이 늘어날 재산이라면 또 다른 취소불가능 생전신탁을 통해, 미리 증여를 해서 본인의 사후 발생할 유산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유산상속계획은 미리 살아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다. 잘 정리된 유산상속계획을 통해 절세계획도 미리 세우고 가족들간의 화목도 지키도록 전문가와 꼭 상담하길 권고한다.



## 유니티뱅크의 E-Banking 덕분에 비즈니스를 보는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제공하는 은행은 많습니다. 그러나, 유니티뱅크는 고객의 비즈니스 규모와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평가도 다릅니다. 복잡한 자금 결제 및 재무관리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유니티뱅크의 E-Banking 팀을 만나보십시오. 효율적인 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비즈니스의 미래를 바꿔드립니다.

기업의 성공, 앞서가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unitibank** @  
www.unitibank.com





William Kim 공인회계사

# Give yourself some credit

As we embark on another income tax filing season, you will most likely see a lot of websites talk about smart tax savings methods. All of these methods fall into two categories: postponing income or income tax deductions and credi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ax deductions and credits so you can make a wise decision. A tax deduction reduces your taxable income, whereas a tax credit directly reduces how much you owe in taxes. In other words, a tax credit is a dollar per dollar reduction of your income tax liability.

## Examples.

**Tax Deduction :** You donate \$10,000 to your local church throughout the year. Let's assume your applicable income tax rate is 25%. You can easily compute your financial benefit of \$2,500 by multiplying \$10,000 by 25%.

**Tax Credit :** The Child Tax Credit is an important tax credit that may be worth as much as \$1,000 per qualifying child depending on your income. Assuming your income qualifies and you have two qualifying children, you will receive a \$2,000 tax credit. If your income tax obligation prior to your tax credit was \$5,000, your net income tax liability would be \$3,000 after deducting your tax credit (\$5,000 minus \$2,000).

There are a variety of tax credits and deductions for taxpayers. I have summarized a few of the tax credits that may help you optimize your income tax.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is a nonrefundable tax credit available to a taxpayer who pays someone for the care of a qualifying person while the taxpayer is working or looking for work. The tax credit is a percentage of the taxpayer's work-related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not to exceed \$3,000 for one qualifying person and \$6,000 for two or more qualifying persons.

A taxpayer eligible for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must have paid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for the care of a qualifying person during the year in order to work or to look for work. In addition, the taxpayer must have earned income during the year. If the taxpayer and

spouse are filing jointly, both must have earned income during the year unless an exception applies because the spouse is a student or unable to care for him or herself.

## Education Cred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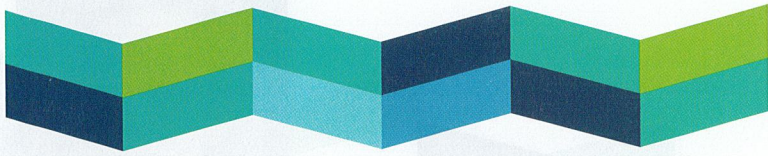
Two tax credits are available to assist taxpayers in offsetting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nd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Although these tax credits have certain similarities, they also differ from one another in several respects.

A taxpayer whose income does not exceed certain limits may be able to claim an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of up to \$2,500 fo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paid for each eligible student, part of which is a refundable credit. Thus, the maximum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 any taxpayer is equal to \$2,500 times the number of eligible students.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is available only for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during which time the student must be pursuing a degree or another recognized credential.

In general, an American opportunity credit can be claimed only by a taxpayer who meets certain requirements. The three requirements a taxpayer must meet in order to claim the credit are the following: 1. The taxpayer paid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of higher education; 2. The education expenses paid by the taxpayer were paid for an eligible student; and 3. The eligible student is the taxpayer, the taxpayer's spouse, or a dependent for whom the taxpayer claims an exemption on his or her tax return.

The expenses that qualify for an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re those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the taxpayer pays for himself or herself, a spouse, or a dependent for whom an exemption is claimed. For purposes of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include tuition,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Room and board expenses are NOT considered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is available for an unlimited number of years, in contrast to the four-year limit applicable to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nd is available for all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s well as for courses to acquire or improve job skills. Additionally, the maximum



annual lifetime learning credit is \$2,000 per return rather than \$2,500 per eligible student (the maximum American opportunity credit). Thus, the maximum taxpayer credit does not vary with the number of eligible students.

The expenses that qualify for a lifetime learning credit are mostly similar to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with one exception. To qualify for the lifetime learning credit,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must be purchased from the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The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Saver's Credit," is a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certain taxpayers to make an IRA or qualified plan contribution. Such contributions by individuals who meet certain adjusted gross income criteria result in a tax credit in addition to any other tax advantages.

The tax credit is a nonrefundable credit that is limited to the applicable percentage of the contributions up to \$2,000. The percentage of the contribution (up to \$2,000 maximum contribution per individual) that is available as a tax credit depends upon the individual's adjusted gross income and his or her tax filing status.

### Child Tax Credit

The child tax credit is a nonrefundable credit that may reduce the taxpayer's tax by as much as \$1,000 for each of the taxpayer's qualifying children. Since the child tax credit is a nonrefundable tax credit, it is available in full only to taxpayers whose income tax liability is at least as great as the credit.

In addition to having a tax, a taxpayer must also have a qualifying child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the child tax credit, a qualifying child is someone who was under the age of 17 at the end of the tax year. They must also be either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ave lived with the taxpayer for more than half of the year and is claimed as a dependent on the taxpayer's return. These are some of the requirements needed for a qualifying child.

The aforementioned tax credits all have 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eligibility and qualifications, so be very careful when filing your income tax return. If you have any questions, it's always a good idea to seek out a qualified CPA.



집에서 사무실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길에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한국일보**

필요한 뉴스  
유익한 정보  
꼭 읽어야 할 신문

3731 Wilshire Blvd., 10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김민섭 공인회계사

#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할까 말까?

젊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이들은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부를 축적하게 된다. “부”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리 오래지 않았던 90년대만 해도 집 한채와 은행 잔고 얼마면 “중산층”이라 그룹에 속하였으나 이젠 그 중산층이란 개념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말았다. 단 한번도 자신을 부유하다고 느낀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집 한채, 주식 펀드계좌, 401k 나 IRA같은 은퇴 계좌(retirement accounts), 그리고 이런저런 용자빛까지 합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것이다. 미국 TV를 보면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의 광고중 하나가 Schwab이나 Merrill Lynch 등 노후 및 자산관리 회사들 관련인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얼마간 거주를 하신 분들은 한두번쯤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이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생전신탁” 정도로 풀이되는데 아마 이것만으로 “아~ 그래”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듯 하다. 리빙 트러스트는 한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미주류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중산층 분들은 최소한 하나의 리빙 트러스트 혹은 경우에 따라 여러개 트러스트를 소유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제는 한인 손님들 중에도 리빙 트러스트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막상 이것을 설립할 결정을 하실 때가 되면 갑자기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자신은 실제로 소유한 자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 할 필요가 없다는 분, 어차피 자손들에게 상속이 될테니 굳이 절차와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기가 귀찮다는 분 등 리빙 트러스트라는 개념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막상 실행으로 옮기기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보게 된다.

과거에는 리빙 트러스트란 오직 부자들에게만 필요한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리 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도 당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좀 부지런한 분들은 인터넷 여기저기서 광고하는 “스스로 트러스트 만들기”등을 통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훌륭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본듯 하다. 아직도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것인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금전, 부동산,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사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 혹은 상속이 이루어질지 미리 지정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사람은 죽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역할을 이행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고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혼동, 또는 비용을 미리 예방하고 본인이 희망했던 뜻 그대로 재산이 관리되고 분배가 되도록 하는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 왜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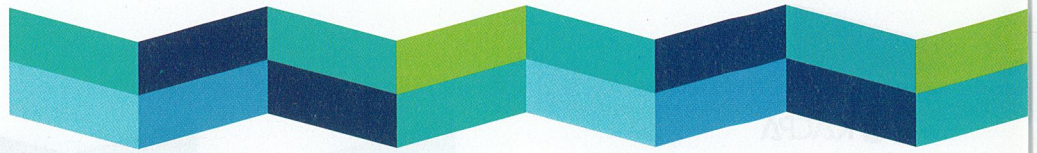
만약 나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내가 사망한다면?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산의 관리능력이 미비해서 어린 나이에 다 탕진해 버린다면? 내 아이가 불구가 있어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내 자녀가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직계 가족이 나의 유산에 욕심을 낸다면? 혹 발생할지 모르는 상속세에 대해 미리 잘 계획하여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위의 질문들이 모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속할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것쯤 그냥 몇장의 유언장으로 해결될 것을 굳이 리빙 트러스트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제대로 만든 유언장만 있어도 재산 상속의 많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재산이 바로 상속이 되지 않고 법정관리 혹은 probate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 9개월에서 심할 경우 몇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운이 없으면 몇만불에 이르는 법원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다행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놓은 경우에는 이 불필요하고도 힘든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probate라는 절차를 피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Probate이란?

만약 리빙 트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유언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산은 반드시 법원의 관리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 지는데 이 절차를 probate이라고 부른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총 재산15만불 이상이면 probate을 거쳐야 하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절차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이 있으면 그나마 어느정도의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것조차 없다면 법원에서



적절 나서서 상속인이나 부채같은것을 일일이 정리를 해 주어야 함으로 이 와 중에 피상속인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Probate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1년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기간이며 또 전체 자산의 10%를 넘을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은행의 loan 같은 빚을 감안하지 않은 총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니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고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각해 버리는 경우도 올수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운이 나쁘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 시가를 받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억울한 상황도 올 수 있으니 probate의 이런 여러가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리빙 트러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 트러스트 관리자 (trustee)의 역할

대부분의 경우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obate에 의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상속인이 굳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부상이나 불구로 인해 정신 및 신체불능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라도 리빙 트러스트에 지시한 내용에 따라 재산의 관리되고 분배될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가능하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에는 재산의 관리자, 의료 사전 결정자, 미성년 자녀나 불구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자등을 해당되는 경우에 맞추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재산 보호 및 상속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법원의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를 책임 관리하는 수탁자 혹은 관리자(trustee)를 지명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인의 생전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trustee를 맡는 경우가 많으나 사망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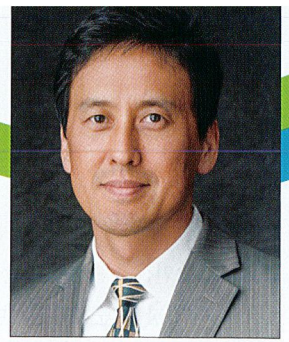
후에는 후계 trustee가 이 역할을 이어받아 고인의 바램대로 리빙 트러스트를 관리해 나가게 된다. Trustee의 권한과 책임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원했던 그대로 재산의 관리와 상속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trustee를 선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 설립시에 유의할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분들은 인터넷을 열심히 활용하여 거의 do-it-yourself 식으로 직접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적어도 몇천불이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의 비용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 방법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잘만 하면 실제 목적을 무난히 이룰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영문으로 된 법률 문서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과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일단 리빙 트러스트 및 관련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설립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때만 적절히 도움을 받으면 됨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트러스트도 여러가지 다른 종류가 있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알맞는 트러스트를 골라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생을 걸쳐 이루어낸 재산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고 상속이 영똥하게 이루어 진다면 이만큼 슬픈일도 없을 것이다. 설립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든다는 점은 분명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probate 절차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고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또 금전적 손해 및 갈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권유드린다.





전석호 공인회계사

# 사업체의 회전율 분석

중소 사업체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가 회전율을 계산해 보는 것이다. 경영분석이란 재무제표에 나타난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 그 중에 회전율 분석은 사업체의 여러 흐름의 빠르고 느림을 측정하여 평균 산업 지수 등과 비교 등을 통해 경영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회전율이란 다른말로 활동성 비율이라고도 하고, 사업체에 투입된 자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나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보통 불경기일때 이 수치는 낮아지게 된다.

먼저,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 rate)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총원자재 구입 원가(Cost of Goods Sold)를 연평균 재고상품액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사업체가 활동성이 강하여 창고 및 매장의 재고상품이 바쁘게 순환하고 회기 말에는 최소한의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수치가 만약 4로 계산되면, 1년에 재고상품이 4번 회전한다는 의미이며 한번 새로운 재고상품이 들어와서 모두 팔려나가는데, 즉 한번 회전하는데 3달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이 수치가 1이라면 재고상품이 1년에 한번 회전한다는 의미이므로 특별한 산업 분야의 사업체가 해당될 것이다. 만약, 이 수치가 그 업계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면, 먼저 많은 재고자산이 창고에 가득할 수 있고,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체라고 봐야할 것이다. 반대의 예로, 과일 채소 등을 주로 파는 그로서리 마켓이나 싱싱한 음식 재료를 항상 구비해야하는 일식당이라면 당연히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아주 높아야겠다. 재고자산이나 상품은 바로 현금화되는 주요 자산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불경기일수록 특별히 재고를 잘 유지하여 수요감소 및 계절적 수요증가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동시에 재고자산의 고령화 및 분실 등에도 주의해야한다.

매출채권의 회전율(A/R turn-over rate) 또한 중요한 지표로, 총 외상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채권액수로 나눈 것이다. 이는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 A/R)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알 수 있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현금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사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알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할 중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만약 6으로 계산되면 1년에 6번 회전하는 것으로, 외상 판매 후 2개월만에 매출채권이 회수되어 현금화 된다는 의미이다. 불경기일때는 이 수치가 감소하게 되며, 고령화되는 매출채권의 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이 수치는 감소하는데 매출채권의 전체적인 양이 늘어난다면 흑자 도산의 위험을 조심해야한다. 한마디로 현금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량매출채권이 전체 중에 얼마나 존재하는

가 또한 중요 이슈가 된다. 오래된 매출채권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니 회계상으로는 일정 액수가 경비 처리되어야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한다.

생산성과 관련하여서 1인당 매출액이란 지표도 있는데, 이는 사업체의 종업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수치가 높을수록 좋으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사업체에 적정한가와 어떤 직원 혹은 어느 부서의 직원 감소에 따라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출액을 총자산에 대비해 보는 총자산 회전율도 있다. 계산은 연간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는데, 동종 산업간의 평균 수치와 비교해본다. 그 수치는 높을수록 좋으며, 만약 낮으면 매출에 비해서 회사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사업체에 불필요한 자산이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효율성 비율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총 매출과 대비하여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효율성은 떨어지는 사업체인 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를 통한 간단한 경영분석을 설명해 보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지표를 추가로 계산할 수 있어야하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비교 분석이 달라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무형의 사업 자산도 많으며 미래의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예로 경영진의 경험 유무와 청렴성 등 인품, 사업적 판단능력 및 조직력, 회사의 역사와 지명도, 마케팅 및 네트워킹 능력, 회사 각 부의 역량과 직원들의 열정 등은 재무제표에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무제표 분석 및 기타 다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함께 요직의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체 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state Planning · Probate

# 유산상속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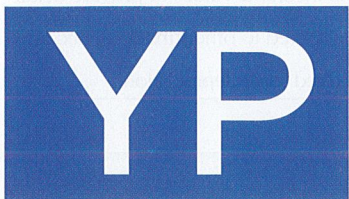
## 박유진 변호사

### 유산상속법 (Estate Planning)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은 유산상속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3)380-9010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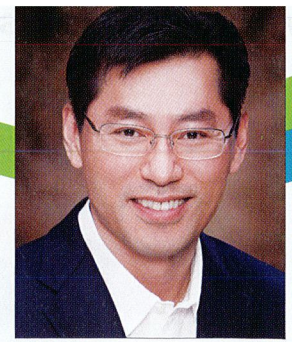
유산상속계획은 사후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계획에서 시작하여 사후 재산관리까지 상속계획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유산상속계획은 유산상속법정을 통하지 않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보호자 설정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음 세대로의 원활한 자산상속을 위해 유산상속세/ 증여세를 줄이는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며 비즈니스 상속까지 좀 더 포괄적인 상속계획입니다.  
유서/위임장 작성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s) and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신탁설립 (Living Trust)  
부부신탁 (Disclaimer Trust, A/B Trust, QTIP Trust)  
생명보험신탁 (Life Insurance Trust)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  
사단법인 (Private Foundation) & 회사설립 (LLC or Family Limited Partnership)  
유산상속법정 (Probate Administration) 과 상속분쟁 (Probate Litigation)



3550 Wilshire Blvd., #1100,  
Los Angeles, CA 90010  
Fax (213) 380-9011 Cell (213) 700-1619  
**Tel (213) 380-9010**

info@parklaws.com



Philip Son 공인회계사

# Cost Segregation Study

A Cost Segregation Study is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costs associated with a construction project or an asset purchase. The objective of a Cost Segregation Study is to maximize available depreciation benefits by segregating and documenting the cost of all short life property identified as part of the capitalized cost of the project or purchase.

Proper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through Cost Segregation Analyses can significantly reduce your Federal income tax liability. A Cost Segregation Analysis breaks down construction and acquisition costs and allocates them to specific categories: tangible personal property, land improvements and real property.

The results of a Cost Segregation Study can save you, on a net present value basis, approximately \$210 for every \$1,000 of property reclassified from long life to shorter life depreciation categories.

Without a Cost Segregation Study, it is difficult to separate all the personal property and land improvement costs, as well as indirect costs, from the total cost of the building. The result is that all such property may be subject to 39-year straight-line depreciation (27.5 years for residential real property).

## What Situations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st Segregation Analysis?

Current construction

Renovations

Leasehold improvements

Acquisitions

Look-backs at assets on your balance sheet

## When You Remodel, Build New, or Perform Leasehold Improvements

Under 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a substantial percentage of a building's construction or renovation cost may qualify for shorter cost recovery periods, generating tax savings and cash flow by accelerating the depreciation of those assets.

However, the basis of these costs may be hidden from view in the construction documentation. Cost segregation professionals, using quantity surveying and estimating techniques, are trained to expose these hidden costs, bringing to light an audit trail that supports the savings made possible by the accelerated depreciation of those assets.

## Existing Properties

Building owners with assets on their balance sheets that are not being depreciated properly can use a Cost Segregation Analysis to determine how these existing assets should be depreciated and what 481(a) adjustments can be recognized. Cost Segregation Studies serve as the reference document for filing IRS form 3115-Request for Change in Accounting Method, which allows the new found benefits to be realized immediately by the taxpayer under current tax provisions with current year tax filing rather than amending prior year tax returns.

## When You Purchase a Building

With existing buildings, it can be difficult to precisely establish the optimal cost recovery periods for all the assets acquired. A purchase cost study with a cost segregation emphasis makes it possible to substantiate the cost of each item eligible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 Design Coord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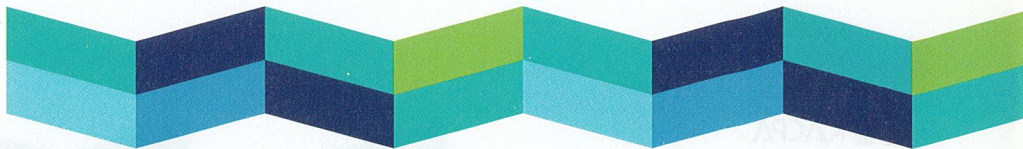
Coordination of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documentation with current tax laws affecting depreciation is another way to generate cash flow benefits in new construction or renovation projects. Cost segregation professionals can assist your project team in designing into the facility assets that can take full advantage of the prevailing tax saving opportunities in fixed asset accelerated depreciation.

## Leveraging Your Tax Savings

Good Cost Segregation Studies have a high level of detail that can provide benefits that can go beyond providing Federal tax benefits. They may help you negotiate more favorable insurable values or provide detail for property records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other financial, tax, and property tax reporting issues beyond fixed asset depreciation.

## Case Study Examples





**Purchase of High Rise Multi-tenant Office and Retail Center** - An international real estate developer retained cost segregation professionals to provide a tax depreciation analysis of their \$325 million purchase of a 44-floor, multi-tenant office and retail center. Using building construction documents and field notes to segregate core building construction versus tenant leasehold improvements, the consultants determined which property was eligible for accelerated tax depreciation resulting in a net present value tax benefit of over \$3.6 million.

**Analysis of a New Sports Complex** - Cost Segregation consultants were retained by a developer to provide a tax depreciation analysis of a new sports complex constructed on a 125 acre site. The development included a 27,000 seat sports stadium, an 8,000 seat tennis stadium, tournament and practice tennis courts, practice fields, and a sports injury rehabilitation center. The cost segregation consultant secured construction cost schedules and as-built construction drawings for the analysis. The net present value tax savings on this \$100 million project was over \$11 million.

**Analysis of 22 New Casual Dining Restaurants** - Cost segregation consultants performed an analysis on 22 new, casual dining restaurants with an average construction cost of \$2.3 million per location. Utilizing the existing construction documentation and site visits, the analysis resulted in a net present value tax savings of approximately \$1.6 million.

### **Benefit Analysis**

Experienced cost segregation professionals should provide interested parties with a net present value benefit analysis and a proposed fee, generally at no charge, if provided some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1.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new facility: size, configuration, type of construction, etc.
2. The total capitalized construction cost broken into as much detail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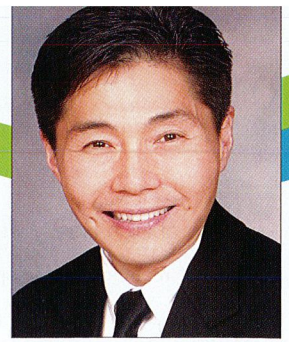
is readily available.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on AIA document G702/G703.

3. Copies of the approved change order log.
4. What was the project delivery method...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 construction manager, design build, other?
5. How was the project priced... guaranteed maximum price, cost plus, other?
6. The total value of soft costs that will be capitalized as part of the project.
7. The value of any construction-related contracts that may be held by you directly and were not delivered through the contractor.
8. How will you account for the depreciation of furniture, fixtures, and equipment that are part of this project? Would you like to make this part of the study or will you do this in-house? What is the value of the FF&E, special equipment, etc. and is it included in the total project cost?
9. Any information about your tax position as it relates to depreciation.
10. The total capitalized project cost or total acquisition cost split between land and building (for acquisitions).
11. A copy of the site plan and floor plans.
12. A tenant roster or rent roll with occupied area noted for multi-tenant buildings.
13. The address and location of the subject project.

### **Conclusion**

The ultimate success of a Cost Segregation Study is determined if and when it passes through audit by the IRS. Having an experienced cost segregation professional who has a thorough knowledge of estimating techniques, construction methods, quantity surveying, and tax laws providing the analysis is your best assurance for a successful result.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 부동산 소유의 형태를 이용한 절세방안

부동산 명의를 어떻게 소유하는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된다. 부동산의 명의를 등록하는데는 다음과 같이 크게 8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1.개인 (Sole Proprietorship), 2.파트너십 (Partnership), 3.코퍼레이션 (Corporation), 4.S코퍼레이션 (S Corporation), 5.TIC (Tenant In Common), 6.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s), 7.신탁 (Trust), 8.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 :** 재산권의 명의를 등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대다수의 부동산은 개인 소유로 하는게 가장 합당할 때가 많다. 또는 부부가 소유주가 될 때도 그러하다.

**2. 파트너십**은 세금을 내지 않는 단순한 통로 역할을 하는 형태로 개인 소유권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Form 1065라는 양식으로 따로 소득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링 벌과금을 내야한다. 또한, 파트너십의 결정적인 단점은 파트너십의 지분은 개인 소유와는 달리 1031 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파트너십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코퍼레이션**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좀처럼 쓰여지지않는데 1) 이중과세의 단점과 2) 장기양도 소득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혜택을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에서 주주로서 코퍼레이션을 대표해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점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비즈니스를 하게될 경우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을 마치 당연지사

로 생각하고 또한 법적 소송의 책임을 유한 책임으로 한정해 두고 싶어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에도 코퍼레이션을 만들어 이를 달성하려하지만 이는 너무 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무모한 행위이다. 따라서, 개인으로 소유권을 등록하고 이를 적절한 보험을 들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4. S코퍼레이션**은 파트너십의 장점과 코퍼레이션의 장점을 합한 형태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소유의 방법으로는 코퍼레이션 보

다는 더 좋은 형태이다. 파트너십 처럼 세금을 내지않고 단순히 통로 역할을 하는 형태로 세금혜택이나 소득이 개인 주주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하지만 많은 단점들 또한 있어 이를 설명할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

**5. TIC (Tenant In Common)**은 부부간을 제외하고 둘 이상이 공동 투자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IC는 1031 교환이 가장 자유로운 형식으로 언제든지 소유권의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50/50 또는 10/20/70 등 어떤 형태의 분할 소유가 가능하며, 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는 살아있는 공동소유주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인트 테넌트와는 다른점이다.

**6.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s)**는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소유권이라기 보다는 상속을 위한 계획으로 많이 쓰여지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자주 이용하는 형식으로 배우자가 사망시 살아있는 배우자가 소유권을 자동으로 갖게된다.

**7. 신탁 (Trust) :** 역시 상속을 위한 도구로써 자주 쓰여지며, 파트너십이나 코퍼레이션 처럼 따로 트러스트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8.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의 형식으로 파트너십의 손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세제상의 역할과 코퍼레이션의 유한 책임의 역할을 겸비한 장점을 갖고있는 반면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LLC에 갖고 있는 지분을 따로 1031 교환을 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전체 LLC 자체로는 1031 교환이 가능하다.) S코퍼레이션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는 반면 LLC는 여러종류의 소유권의 형태가 가능하며 소유주의 제한 또한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는 LLC 가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에 비해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또한 S코퍼레이션과는 달리 LLC 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LLC에서 일으킨 융자를 LLC 멤버가 이용하여 손실을 사용하는게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 전문가와 이를 상의하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형태로는 개인 소유권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며, LLC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 보다 더 널리 쓰이는 형태이며, 그룹 투자시에는 TIC가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보여진다.



# Knowledge You Can Trust



THOMSON REUTERS

## UltraTax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UltraTax is The Highest Rated Professional Tax Software 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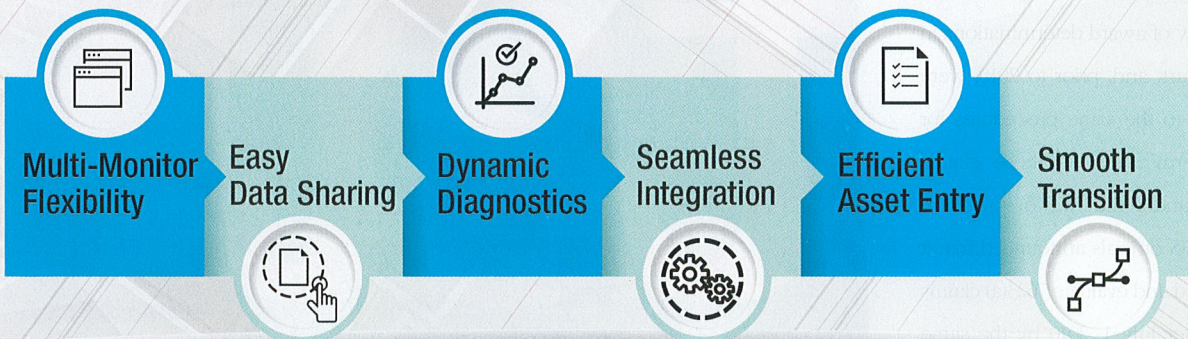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tax software survey conducted by the Journal of Accountancy and Tax Advisors)

\* Used by over 93% of all practicing Korean CPAs and EAs in greater NY area

\* Used by over 180 practicing Korean CPAs in California

\* Used by 7 out of 10 largest Korean CPA firms in the US

e-Consultants Inc. 를 통하여 UltraTax Program을 구입하실 경우 상당한 **가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io S. Kim 변호사  
Partner, LimNexus LLP

# IRS Whistleblower Program

In 1867, Congress enacted legislation that allowed the government to pay awards to individuals who provided information that aided in detecting and punishing those guilty of violating tax laws.

Initially, Congress appropriated funds to pay these awards at the government's discretion. In 1996, Congress increased the scope of the program to also provide awards for detecting underpayments of tax and changed the source of awards to money IRS collects as a result of information whistleblowers provide.

The Tax Relief and Health Care Act of 2006 created an expanded whistleblower award program to complement the existing whistleblower program. This article refers to the original program as the 7623(a) program and the expanded program as the 7623(b) program after the Internal Revenue Code subsection that authorizes the different award payments. Claims submitted under the 7623(b) program are those that allege a tax noncompliance of over \$2 million and are subject to a mandatory award of between 15 and 30 percent of collected proceeds, to be determined by the IRS Whistleblower Office ("WO") based on the extent of the whistleblower's contributions. Whistleblowers may appeal an award determination under 7623(b), including the denial of an award, in the Tax Court.

Claims submitted under the 7623(a) program are more discretionary: they are not subject to statutory minimum award payments, are not eligible for judicial review of award determinations in the Tax Court, and, prior to 2010, were not subject to the same procedures for award determination as those claims submitted under the 7623(b) program. However, IRS officials announced that it would award and evaluate 7623(a) claims received after July 1, 2010 by the same process it uses for the 7623(b) program for claims submitted after the annou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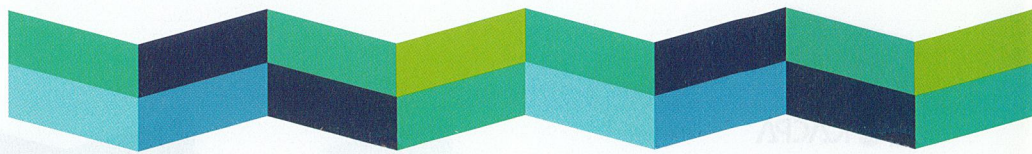
ment. That is, 7623(a) whistleblower claims received after July 1, 2010 will be paid between 15 and 30 percent of collected proceeds and will be based on the same factors used to determine 7623(b) awards.

Between fiscal year 2011 and June 30, 2015, the WO awarded over \$315 million to whistleblowers - the bulk of which was for the 7623(b) claims, which were first paid in fiscal year 2011, 4 years after the program started.

**Initial review :** The whistleblower claims process involves multiple steps, starting with a whistleblower's initial application and ending with a rejection, a denial, or an award payment. The process begins when a whistleblower submits a signed Form 211, Application for Award for Original Information, to the WO. The Deputy Commissioner for Services and Enforcement has set a 90-day target for completion of the initial review and about 67 percent of 7623(b) claims are processed within this time frame.

**Taxpayer examination and appeals :** The examination, appeals, and collection process may take several months to several years, depending on the tax issues raised, agreement by the taxpayer, and payment. The length of this process ranged from 6 months to more than 4 years, with an average of 2 years. Audit length can be affected by case complexity,





availability of documentation, taxpayer cooperation, and availability of IRS resources. Taxpayer appeals also have the potential to extend the time a claim is open. Taxpayers may pursue an appeal with the IRS Office of Appeals, which generally takes between 90 days and 1 year to complete, or by filing suit in Tax Court, which may take several months to over a year to litigate.

**Waiting period and award determination :** The WO only calculates the award once collected proceeds are final, which occurs after the expiration of any remaining appeals rights of the taxpayer and the right to request a refund. The refund statute expiration date (RSED) - which extends at least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last payment made by the taxpayer to settle the tax liability related to the whistleblower's claim - is the date at which IRS has what it considers to be finalized collected proceeds. The WO does not pay awards before the RSED to avoid paying an award on proceeds that could later be returned to the taxpayer. In rare cases, the WO may pay an award earlier than this, such as when IRS and the taxpayer sign a comprehensive closing agreement waiving refund rights and immediately finalizing the collection amount.

**Award payment :** After receipt of the awards package, whistleblowers

have the option to accept the award as calculated; submit comments to the award file; or request a review of the full file to see how the award was determined. Whistleblowers who disagree with how an award is finally determined can dispute the award in Tax Court if raising concerns with the WO does not provide relief. Exercise of the review or comment options will lengthen the time to award payment.

Claims often take 4 years to 7½ years from the submission of the Form 211 to the award payment. And, only a very small percentage of claims submitted have closed with an award payment. For example, between fiscal year 2013 and August 5, 2015, only 507 whistleblower claims (or less than 5 percent of 7623(a) and 7623(b) claims) closed with an award payment. During the same period 19,757 claims were closed with no payment. As described above, the WO can deny or reject claims at each point in the process before award payment.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IRS Whistleblower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whistleblowers is that it is a lengthy process, often resulting in no reward for the whistleblower. In other words, unless there is a solid basis for filing an application and the whistleblower is prepared to wait a long time, filing an IRS whistleblower application is not advisable.

**PROFECTUS FINANCIAL**  
ACCOMPLISH. PROGRESS

**알렉스 조 Aleks Dyo      캐리우 Kelly Woo      하워드 이 Howard Lee**

**PROFECTUS FINANCIAL**  
프로펙터스는 라틴어로 “성취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으로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래닝:** 401k | DB Pension Plan 설립 및 투자관리 | 재무 위험 관리 | 절세 전략 및 자산보호 계획 | 그룹 건강보험 | 사업체 보험  
**개인 플래닝:** 투자설계 및 관리 | 은퇴 계획 | 유산상속 계획 | 자산사업 계획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are offered through Profectus Wealth Management Company,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are offered and sold through individually licensed and appointed agents in all appropriate jurisdictions. Aleks Dyo CA Ins.Lic.#0D97068 Kelly Woo CA Ins.Lic.#0G37586 Howard Lee CA Ins.Lic.#0C29994

자세한 내용은 **800.811.6611** 또는 **213.480.9400** 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ProfectusFinancial.com** 을 찾아주세요.



최응환 (Rap Choi) 박사  
CKP LLP 국제조세담당

# 현명한 BEPS 대응전략

최근 국제조세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끄는 이슈는 바로 BEPS이다. 회계사들이 BEPS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네 가지다.

BEPS가 무엇인가?

BEPS가 왜 중요한가?

BEPS가 내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해당고객은 BEPS에 관련하여 무슨 준비를 하여야 하나?

## 1. BEPS는 무엇인가?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자이다. 즉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란 뜻이다. BEPS란 말이 최근 아주 많이 쓰이고 있지만 BEPS는 최근 현상이 아니다. 각국의 세무당국 입장에서 볼 때 BEPS는 다국적기업들이 이미 수년동안 벌이고 있는 조세포탈 또는 조세회피 행태에 불과하다.

그럼 왜 BEPS라는 말이 갑자기 Hot 한 말이 되었는가? 실제로 BEPS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 의미는 BEPS "방지"이다.

왜 BEPS가 지금 갑자기 논란이 되는가? 과거의 경우, 특정국가의 세무당국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세원을 잠식하고 소득을 이전하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세원을 잠식하고 소득을 이전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었다. 물론 세무정보교환 협정이 맺어진 두 국가간에 협조해서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단 두 국가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므로 두 국가의 세무당국만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OECD는 BEPS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및 기존 국제조세제도가 디지털 재화/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말함

OECD는 BEPS를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BEPS 방지를 위해서는 한 국가나 두 국가만의 공조체제로서만 부족하고 다국의 세무당국이 공조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서 OECD는 G20와 공동으로 BEPS 방지 체제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2012년부터는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 10월 5일에 BEPS 방지 관련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2. 왜 BEPS가 중요한가

BEPS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BEPS 유형은 이전가격에 의

한 조세회피이다. OECD/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 역시 이전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BEPS 방지 장치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전가격은 납세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각 국가간 과세주권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전가격이 각국의 과세주권(세수)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국의 과세당국은 적극적으로 과세주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OECD/G20가 BEPS에 대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이전에도 당연히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과 각국의 세무당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조세 이슈였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이전가격 관련 조세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자국의 별도 이전가격 법규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활용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전가격 법규는 각국 세무당국에 의해 aggressive하게 적용되었고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에 요구되고 대대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들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사의 이전가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 구비하고 있다.

## 그럼 뭐가 달라졌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BEPS가 아니라 BEPS 방지 체제의 구성이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BEPS 특히 이전가격을 통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가 구상한 새로운 체제는 이전가격 자료의 해당국가의 세무당국에의 제출 요건의 강화 및 제출되는 이전가격 자료의 국가간의 공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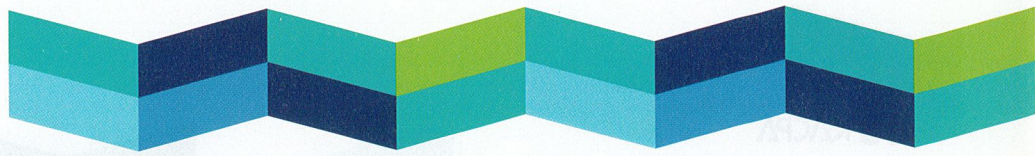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최근의 BEPS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이전가격 원칙이 제시되거나 새로운 이전가격 자체에 대한 법규가 신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이전가격 관련 자료작성 및 제출요건이고 이런 제출된 자료의 국제적 공유체제이다.

BEPS하의 주요 이전가격 관련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는 아래와 같다.

개별기업 보고서 (Local File)

통합기업 보고서 (Master File)

국가별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CbCR)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OECD/G20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과거에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전가격 관련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각국의 세무당국간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 3. BEPS가 내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기존의 이전가격 보고서나 제출서류가 한 국가 또는 두 국가의 세무당국에 제출이 요구되었다면 BEPS체제 하에서는 추가적인 이전가격 보고자료가 작성 제출 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다국적기업은 이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의 일관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출문서	정의	의의	주요내용
<b>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b>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사업운영, 이전가격 정책 등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게 되는 보고서	다국적 기업 본사(모기업) 차원에서 작성 다국적 기업이 소재하는 현지법인들은 본사(모기업)로부터 받아서 각국 과세당국에 제출하게 됨	다국적기업 전체 조직도, 사업설명, 무형자산, 내부금융거래, 재무현황 등
<b>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b>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 정보, 거래규모, 이전가격 결정 분석내용 등 개별 기업 소재지국 과세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서	현지법인 별로 작성 해당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보고 국가간 공유목적은 아님	해당국에 발생한 주요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들
<b>국가별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b>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별 매출액, 영업이익, 세금 납부실적 등 관련 정보를 글로벌 공통 양식으로 작성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작성 최종 모회사 과세당국에 제출 향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과세관청 간 교환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고용자수, 자본금, 유보이익, 유형자산 등에 대한 총계자료 국가별로 해당국에서 활동중인 개별기업의 리스트 및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

다음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내 고객이 위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이다. 위 자료요건들이 모든 다국적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별로 해당요건들이 정해져 있다.

편의상 대한민국의 BEPS방지 체제상 자료제출 해당 요건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BEPS제도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개별기업 보고서와 통합기업 보고서를 묶어서 국제거래정보통합 보고서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 ①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화거래(무형자산양수도금액 포함), 용역거래, 무형자산 거래 및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 (외국계법인 포함)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이 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일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보고서 (CbCR)를 제출해야 되는 회사는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이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기존의 이전가격 동기 보고서 구비요건 및 기존의 자료제출 요건 (국제거래 명세서 등)을 맞추면 된다.

미국은 좀 특이한 경우로, 한국이나 기타 국가와 같이 개별기업 보고서 (local file), 통합기업 보고서 (master file) 요구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전가격 법규인 482조 및 이하 세부규칙은 이전가격 동기 보고서를 구비해야 하는 요건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local file요건은 이에 준한다.

다만 국가별보고서 요건은 미국에서도 법제화되었다.

미국 사업체, 즉 미국에서 형성된 혹은 미국을 세법상 거주국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해당연도의 글로벌 매출액이 US\$ 8.5억불 (US\$ 850 million) 이상인 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즉 Country-by-Country Report (Form 8975)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국적기업의 궁극적 모회사의 세무신고 시점 (연장 포함)에 혹은 그 전에 세무신고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미국의 CbCR은 6/30/2016에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게만 적용된다.

### 4. BEPS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BEPS에 관련하여 무슨 준비를 하여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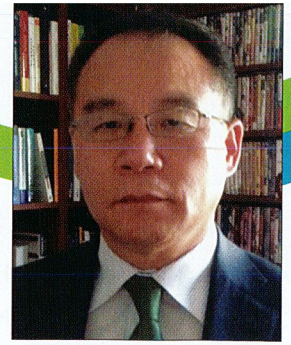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국가에서라도 BEPS 자료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의 이전가격 문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 현재 각 국가별로 신고하고 있는 이전가격거래 관련정보와 각국별 Local 이전가격 문서 검토
- 본사 이전가격 보고서와 Local 이전가격 보고서의 일관성 여부 분석 (여기서 일관성은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 주요 계약서 검토 - 특수관계자 간의 계약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
-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 BEPS관련 요구자료 작성 필요/가능한지 검토
- 회계/재무 시스템 상 자료 관리에 대한 검토
- BEPS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Gap 분석 - 연결/본사 재무자료 vs. 자회사 재무자료 vs. 세무신고 재무자료

### 5. 결론

BEPS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은 다국적기업에게 주요한 변화일 수 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회사의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 주요 BEPS 요구사항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량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은 지나치게 BEPS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BEPS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전가격법규는 여전히 적용되고 BEPS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전가격보고서나 국제거래명세서 등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철저히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Jong H. Kim, Ph.D.  
Professor of Economics,  
Emory University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Bookkeeping

There was a historic showdown in March 2016 in Seoul, Korea: a match between Lee Sedol, 18-time Go champions in the world and AlphaGo, artificial-intelligence computer program, by Google's DeepMind, London-based computer-programming company acquired by Google in 2014. Go game was considered by computer scientists to be the last board game in which machines cannot defeat humans. Most people bet on Lee to win, but to people's dismay, the match was a lopsided game by AlphaGo.

As the world watched, AlphaGo's one-sided victory perfectly demonstrated how enormously influential and powerful impacts artificial-intelligence-equipped computer programs would have on the world economy - in particular, in terms of jobs. In 2013,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Osborne, computer scientists at Oxford University, calculated the probability of automation and computerization for 702 occupations in a widely cited-and-known paper, founding that approximately 47 percent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were highly exposed to potential automation and had a high risk of losing jobs. Subsequent studies also confirmed this figure at 35% of the laborers for Britain and 49% for Japan.

It is a commonly known fact that human workers cannot perform better and be more productive than automated machines in routine and repetitive cognitive jobs. A bookkeeping is a sort of routine and repetitive cognitive job based on fixed and inflexible rule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Frey's and Osborne's study, accountants and auditors are at a very high risk of potential computerization with 94% probability by 2025; in other words, a bookkeeping is highly susceptible to machine-learning systems. With this figure being too overblown and exaggerated, even one tenth of it will have an immensely damaging impact on soon-to-be accountants and students who want to be an accountant in the future.

From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s, we have learned that technology advances have historically wiped out some jobs and generated others and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is trend will not continue even though some futurists like Martin Ford look at this one in completely different viewpoints.

In the years to come, destructive changes to business models caus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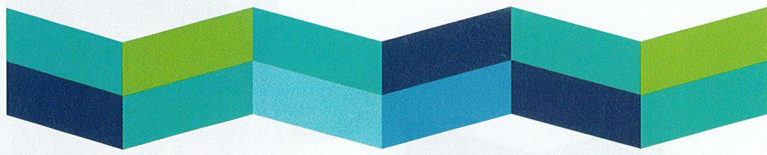
technological advances - especially, A.I.-based computer programs - will profoundly influence employment landscapes. The era has been called or dubb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futurists. As with its name-sake, this new wave of change could lead to technological unemployment, a phenomenon in which workers including white-collar ones this time will be replaced in the short term by new technologies. Steve Varley, chairman and managing partner of Earnest Young, one of Big Four accounting firms, claimed earlier in 2016 that graduate hiring would fall 50% across the firm by the year 2020.

At this point, we should raise a legitimate question: "Will A.I. reduce the need for accounts and auditors?" The answer to it is probability yes, depending on the definition of what an accountant is. If we're looking at some of the more routine and repetitive bookkeeping or process-driven tasks, those are highly likely to be subject to computerization than non-routine cognitive jobs, most of which are high-valued tasks. According to Michael Whitmire, CEO and co-founder of FloQast, an accountancy software startup based in Los Angeles, "A.I. is already starting to automate tedious and routine tasks such as data entry." Right now, automation in accounting is taking place at the entry-level tasks, but it will creep up the corporate ladder and start to destroy higher level accounting jobs.

The broader picture tells that the impact of A.I.-based technology on accounting seems much more benign in the sense that A.I. could increase audit quality as it begins to allow auditors to ask a lot more questions and that it will improve efficiency in what auditors do and it will provide more insight. With more data available, the case load for judgment works is just going to increase whereas process junior work would be automated in the short run. Junior accountants should learn necessary skills they need to develop their careers to be business partners and business coaches to clients and businesses.

Big Four firms leading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 will keep hiring technology graduates while reducing the number of repetitive jobs and the amount of receptive work they do. But there is an expectation of rising demand for accounting business data analysts and business cons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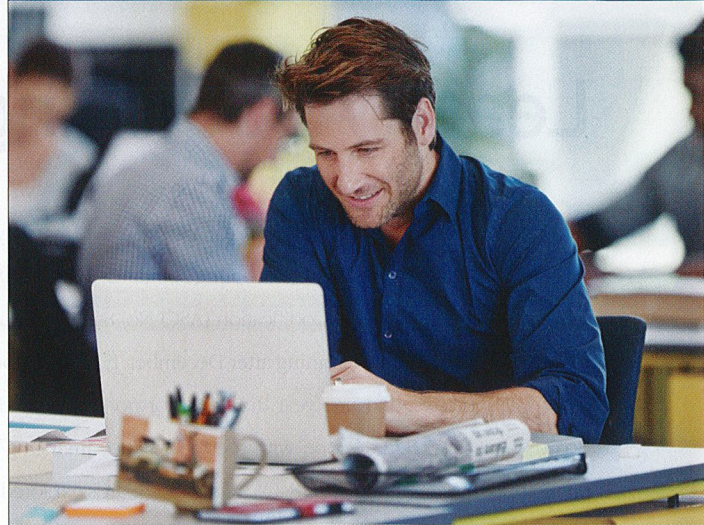
tants in accountancy firms. Big Four firms will continue to make use of A.I.-based technology in order to increase employees' productivity and improve efficiency and the quality of work. If small firms are not ready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y, thus, there is a potentially big risk of being left behind. Even smaller practices must know how to adapt to developing technology, too.

In February 2016, KPMG announced that it had been working with IBM Watson, the most advanced A.I. technology platform available to disclose insights and information from massive quantities of unstructured data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audit by looking at, inspecting and using data in more depth and much faster. In my opinion, A.I.-based technology will be a major boon for accountants in audit teams despite that it will destroy some routine and repetitive bookkeeping and compliance work. Overall, embracing A.I. appears to be unavoidable for Big Four firms and some smaller firms to keep up with technology.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report, very few people in professional services jobs including accounting believe that A.I.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way they work, at least until 2020. In sum, the automation of knowledge-based non-routine jobs can be considered impossible or impractical even with advances in A.I. and machine learning. We have to always keep in mind, therefore, that the most important skill in accounting is communication, soft skills that cannot be replaced by machines at all, so that accounts can actually explain what clients want to know.



## Stay in the Know with the Accountant Knowledge Center



The Paychex Accountant Knowledge Center (AKC) helps accounting professionals access industry news and resources to answer key business questions, increase productivity, and enhance client relationships — with no cost to you or your firm!

- Daily Payroll, HR, and Tax News
- CCH Tax Briefings and State Tax Review Newsletter
- HR Compliance Library
- More than 150 Interactive Financial Calculators
- U.S. Master Tax Guide
- Online CPE Courses
- Client Letter Toolkit

**Register for the AKC to  
access the 2017 Online MTG!**

[paychex.com/AKC](http://paychex.com/AKC)

**PAYCHEX**<sup>®</sup>

Payroll • HR • Retirement • Insurance

Paychex is a proud sponsor of the KACPA.



Hong S Pak, Ph.D.  
공인회계사

# Lease Accounting Ru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finalized its six-year joint lease project with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by issuing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No. 842 in February 2016, effective for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15, 2018 for public and other listed entities, and one year thereafter for non-public entities. The Boards have intended to cope with the “off-balance financing” issue of previous lease accounting (ASC 840)<sup>1</sup>. While the Boards explored different lessee and lessor accounting models from ASC 840’s lease classification model, the Boards finally decided to retain the lease classification model similar to ASC 840, taking into account the complexity of measurement and cost effectiveness concerned with the explored lease accounting mode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ree major differences identified in lease accounting between ASC 842 and ASC 840. These are accounting for an operating lease, a direct financing lease and sale-lease-back transactions.

## Accounting for Operating Lease

ASC 842 requires a lessee to capitalize all leases (except for short-term leases, if elected by the lessee), regardless of the lessee’s lease classification<sup>2</sup>. That is, a lessee for both financing and operating leases should recognize a right of use asset and a lease liability at commencement. Since accounting for an operating lease i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ASC 842 and ASC 840, the following hypothetical case (Case 1) is used to demonstrate how to account for the operating lease.

Case 1: Lending Corp had a 6-year lease contract on its equipment with XYZ Inc. on 1/1/2019. XYZ Inc. should pay \$9,000 annually at year-end, starting 12/31/2019 with no residual value guarantee. Both lessee and lessor estimate the remaining economic life of the leased equipment of 9 years and its fair value of \$63,970. A lessor’s carrying value of the equipment is the same as its fair value at 1/1/2019. The les-

sor’s implicit interest rate of 5% is known to the lessee.

Since any financing lease criteria are not met, the lease should be classified as an operating lease. At commencement, XYZ Inc. should measure the lease liability at the present value of the lease payments not yet paid, discounted at the implicit interest rate for the lease (\$45,681 in Case 1). The lessee should also measure the right-of-use asset which is the same as the lease liability (\$45,681 in Case 1). On 1/1/2019, XYZ Inc. should have the following entries:

Right-of-use asset (Dr.)// Lease Payable (Cr.)	\$45,681
--	----------

Subsequently, a lessee should recognize the lease expense for an operating lease similarly to ASC 840 by recognizing amortization of the right-of-use asset and accounting for payment on lease payable. XYZ Inc. should make the following journal entries to recognize the lease expense composed of interest accrued (\$2,284) on the lease liability and the amortization of the right-of-use asset (\$6,716 or \$9,000 less \$2,284) at 12/31/2019:

Lease expense: interest (Dr.)	\$2,284
Lease payable (Dr.)	6,716
Cash (Cr.)	\$9,000
Lease expense: amortization (Dr.)	\$6,716
Right-of-use asset (Cr.)	\$6,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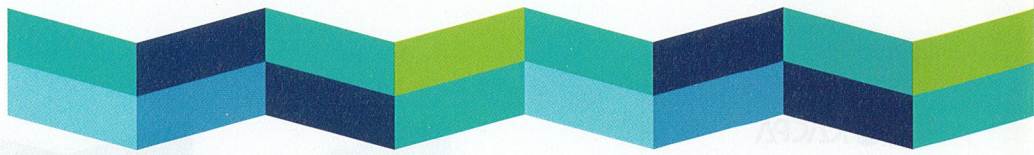
It should be noted that XYZ Inc recognizes \$9,000 lease expense in total, which is the same as lease expense under ASC 840. Also note that amortization of the right-of-use asset is the same as the principal payment of lease liability in Case 1.

## Accounting for Direct Financing Lease

There is no substantial change in lessor accounting. However, ASC 842

<sup>1</sup> While the joint project covers both U.S.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this paper focuses on only US lease accounting standards (ASC 840 and ASC 842).

<sup>2</sup> Refer to ASC 842-10-25-2 for financing and sales-type leas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ASC 842-10-25-3 for direct financing lease classification criteria.



establishes new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 direct financing lease. It provides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a direct financing lease. Since a direct financing lease is viewed that a sale does not occur at commencement, a selling profit from the leased property should be deferred at commencement. Let's use the following hypothetical case (Case 2) to demonstrate how to account for a direct financing lease.

**Case 2.** The facts and assumptions are the same as those of Case 1 except for: (1) the third party's residual guarantee of \$24,509 at 12/31/2024 (or \$18,289 valued at 1/1/2019) and (2) the lessor's carrying value of the leased equipment of \$50,000.

Since a direct financial lease is viewed that a sale does not occur at commencement, the selling profit of \$13,970 (\$63,970 less \$50,000) should be deferred. Lending Inc. should measure lease receivable at the present value of the lease payments not yet received by a lessor and residual value guarantee provided by the third party (\$63,970 in Case 2). Lending Inc.'s journal entries on 1/1/2019 are as follows:

Lease receivable (Dr.)	\$63,970
Equipment (Cr.)	\$50,000
Deferred selling profit (Cr.)	13,970

Subsequently Lending Inc. should recognize interest income on a net investment in the lease (i.e. lease receivable less deferred selling profit) at the implicit interest rate. Thus, Lending Inc. should have the following journal entries on December 31, 2019:

Cash (Dr.)	\$9,000
Interest revenue (Cr.)	\$3,199
Lease receivable (Cr.)	5,801
Deferred selling profit (Dr.)	\$2,633
Interest revenue (Cr.)	\$2,633

### Accounting for Sale and Leaseback Transactions

ASC 840 requires a seller-lessee to defer recognition of any selling profit over a lease term via depreciation of the leased property by following a single transaction approach. However, ASC 842 uses a dual approach to account for the transaction (a two-transaction approach and a single financing approach). The two-transaction approach should be used if the transfer of the asset from the seller-lessee to the buyer-lessor meets

the sale requirements specified in both ASC 606 and ASC 842. Otherwise, the single financing approach should be used. Under the first approach, a seller-lessee should account for the transfer of a lease asset to a buyer-lessor as a sale, and then separately account for the leaseback from the buyer-lessor as a lease transaction. Under the second approach, the sale and leaseback transaction should be accounted for as a single financing transaction.

### Conclusion

There are three major differences identified in lease accounting between ASC 842 and ASC 840. First, a lessee should capitalize operating leases at commencement by recognizing a right-of-use asset and a lease liability in the same way as the capitalized lease under ASC 840. Second, ASC 842 provides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a direct financing lease along with new direct financing classification criteria. A selling profit arising from a direct finance lease should be deferred over the lease term period whil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standards for the direct financing lease are the same with those for a sales-type. Third, ASC 842 follows a dual approach to account for sale and leaseback transactions while ASC 840 does a single approach. The approach allows the lease accounting to be more aligned to the revenue recognition accounting standards (ASC 606). Considering these features, it is believed that ASC 842 significantly improves US lease accounting rules over ASC 840, in particular by removing the criticism of "off-balance financing" on ASC 840.





최준순 공인회계사

# 여행 경비 공제 전략

많은 분들이 사업상 여행경비를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IRS나 주정부의 세무 감사시 여행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상 여행경비를 최대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상 여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면밀하게 여행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 여행을 하면 50%를 초과하는 날을 사업목적으로 보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일동안 사업상 여행을 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용무만으로 이틀이상을 계획하면 안된다. 만약 해외에 14일 이상 여행하게 된다면 적어도 75%이상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메모를 잘해야 한다.

IRS의 감사를 받는다면, 비즈니스 여행 경비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행중 공제한 내역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행이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임과 관련된 사항을 달력이나 계획표에 기입하거나/ 사업상 만난 사람의 명함을 보관하거나/ 여행 중 만났던 사람들을 달력에 기록하거나/ 참석

한 세미나 또는 컨벤션의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돌아와서 감사 카드(Thank-you Card)를 보내고 복사본을 보관하거나/ 여행전 주고 받은 비즈니스 관련 이메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업과 관련된 날을 가급적 늘려라.

사업상 여행과 여가 여행이 합쳐져 있을 경우 여행경비를 공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비즈니스 일자(Business Days)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내에 여행을 할 경우 50%이상을 사업상 일자로 보내야 하고 외국에 14일 이상 여행할 경우 75%가 비즈니스와 연관된 날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일자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하루 중

일 일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일을 했으면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했어도 비즈니스 일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 공제를 위한 정산을 할때 비즈니스 일자로 취급할 수 있다.

비록 4시간밖에 일을 안했어도 숙박, 음식 그밖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일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용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날짜를 가급적 늘려라. 예를 들어 세번의 미팅이 있으면 하루에 다하지 말고 2일이나 3일에 걸쳐 미팅시간을 조정해라.

여행목적지에 가기 위해 가장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말라. 여행중 이동하는 날은 비즈니스 일자에 포함된다. 이동하는 날이 길어지면 비즈니스 일자가 늘어날 것이다. 여행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넷째, Sandwich Day 를 활용하라.

IRS 에서는 비즈니스 날 사이에 아무일을 하지 않았어도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보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면 비즈니스 날로 간주한다.

만약 금요일과 월요일에 미팅이 있으면, 비록 주말에 일을 안했어도 주말을 비즈니스 날로 간주해 준다.

John은 Los Angeles 에서 하와이로 금요일과 월요일에 사업관련 세미나를 갔다. 수요일에 LA를 출발해서 다음주 수요일에 돌아왔다. 주말에는 어느 비즈니스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주변 바다에서 휴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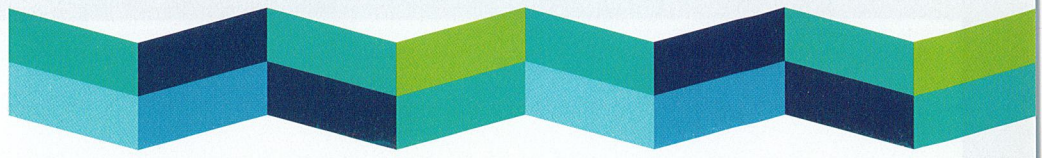
하와이에 체류하는 비용이 LA로 돌아오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주말에 LA로 돌아오지 않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비즈니스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된 숙박과 음식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의 감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상 여행경비에 대하여 면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김미경 (허미경 공인회계사)



## 오후 여섯시의 프리웨이

여섯시의 프리웨이는  
일터를 빠져 나온 물고기들로  
가득 메워진다

종일 비린내 나는 좌판 위에서  
별장계 충혈된 눈으로 펼떡거리다  
호느적 돌아 가는 중  
무한한 저 끝으로 헤엄쳐 나가기엔  
하루 끝에 묻어 온 고단함이 너무 진하다

프리웨이는 어느새  
다닥 다닥 비늘 가득한 거대한 이무기로 변한다  
허연 눈을 부라리며 옆구리를 틀어 보지만  
생존의 그물  
짐이 되고 업이 되어 얽어 매고 있다

‘언제고 치 오를 날이 오겠지’

천내 나는 아가미를 열고  
어두워 지는 자유로에서  
찬란한 꿈 한 모금 들이켜 본다

서울문학인 신인상 수상경희해의문학상 수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집: 2인 시집 <롤러코스터를 타는 여인들>  
Orange County 공인회계사로 활동



# 2016 - 2017 KACPA BUSINESS EVENTS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2016-01-19	<b>January Seminar - 4 hours</b> 2015/2016 Tax Updates - Individuals Sales Tax— Internet Sales and POS 2015/2016 Tax Updates - Extenders & Others
2016-01-19	<b>Board Meeting</b>
2016-02-02	<b>한국일보 후원 교민 대상 택스 세미나 - Los Angeles County</b>
2016-02-04	<b>한국일보 후원 교민 대상 택스 세미나 - Orange County</b>
	<b>Tax Update - Individual and FBAR/FATCA Update : Jinsung Hahn CPA</b> <b>FAFSA - Andrew Kang CPA</b> <b>Social Security Update - Social Worker from SSA</b>
	<b>교민 대상 Radio 상담</b>
2016-02-17	<b>Radio Seoul</b>
2016-02-26	<b>YTN FM</b>
2016-03-24	<b>Radio Korea</b>
2016-04-19	<b>April Seminar - 2 hours</b> <b>Employment Law Updates</b>
2016-05-17	<b>May Seminar - 4 hours</b> <b>Like Kind Exchange</b> <b>S Corporation Taxation, Acquisition &amp; Sale and other Issues</b>
2016-05-17	<b>Board Meeting</b>
2016-05-21	<b>Bankers, CPAs &amp; Professionals Golf Tournament</b> <b>Industry Hills Golf Course</b>
2016-06-16	<b>Installation Dinner</b> <b>Oxford Palace Hotel</b>
2016-07-12	<b>July Seminar - 2 hours</b> <b>What CPAs should know about Transfer Pricing</b> <b>an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
2016-08-06	<b>August Seminar - 3 hours</b> <b>Rising Health Care Costs</b> <b>A Framework for your retirement</b>
2016-08-06	<b>KACPA Members Golf Tournament</b> <b>Los Verdes Golf Club</b>
2016-08-09	<b>Board Meeting</b>
2016-09-01	<b>CPA Forum</b>

2016-09-20	September Seminar - 4 hours Ethics - Code of Conduct and Independence Ethics - Principles of Ethics
2016-09-20	Board Meeting
2016-09-25/28	2016 KASCPA Convention in Washington D.C.
2016-10-18	October Seminar - 4 hours Grantor Trust & Fiduciary Taxation LLC Taxation
2016-11-03	Professional Mixer
2016-11-15	November Seminar - 4 hours IRS' various topics, including E-services Authentication Process, Private Debt Collection ESOP, The Basics
2016-11-15	Board Meeting
2016-12-08	Christmas Party Oxford Palace Hotel
2017-01-17	January Seminar - 4 hours GAAP Updates Labor & Employment & Accountant Malpractice Issues 2017 Tax Updates
2017-01-17	Board Meeting
2017-02-02 2017-02-07	한국일보 후원 교민 대상 택스 세미나 - Los Angeles County 한국일보 후원 교민 대상 택스 세미나 - Orange County
2/17-3/17	교민 대상 Radio 상담 Radio Korea, Radio Seoul, YTN
2017-04-25	April Seminar - 2 hours
2017-05-23	May Seminar - 4 hours
2017-05-23	Board Meeting
2017-06-03	Bankers, CPAs & Professionals Golf Tournament Industry Hills Golf Course
2017-06-29	Installation Dinner (Oxford Palace Hotel)

# KACPA Board of Directors List 2016-2017

ALBERT D. JANG, CPA

ALBERT J. JANG, CPA

ANN H. LEE, CPA

BIHO KEVIN CHA, CPA

BYUNG CHAN AHN, CPA

CHARLES LEE, CPA

CHARLES C. LIM, CPA

CHRISTIE CHU, CPA

CHULHYUNG (Chester) BAE, CPA

DAVID S. SHIN, CPA

DOUGLAS CHONG, CPA

GARY J. SON, CPA

HAN WOOK CHO, CPA

HENRY S. CHI, CPA

HOON KIM, CPA

JAE SUN SONG, CPA

JAMES M. CHA, CPA

JAMES Y. LEE, CPA

JANE KIM, CPA

JINNIE KANG, CPA

JINSUNG HAHN, CPA

JONG HWAN KWAK, CPA

JOONSOON CHOI, CPA

JUN CHANG, CPA

JUSTIN C. OH, CPA

KENNETH C. HAN, CPA

KEVIN CHUN, CPA

KI HO CHOI, CPA

KIMBERLY ABE, CPA

KYUNG MOO KIM, CPA

LAWRENCE S. JEON, CPA

MINNIE LEE, CPA

RICHARD WANG, CPA

SAMUEL B. CHOI, CPA

SEUNG YOL KIM, CPA

SHIN YONG KANG, CPA

SOH YUN KANG PARK, CPA

STANLEY CHA, CPA

STEPHANIE BAE, CPA

STEVEN Y. C. KANG, CPA

SUNG BUM CHO, CPA

TONG WON KO, CPA

WILLIAM KIM, CPA

WOHN CHUL KIM, CPA

YOON HAN KIM, CPA



# 2016 - 2017 Officers (2016년 임원 명단)



*President*  
**Gary Son**



*Vice President*  
**Ann H. Lee**



*Secretary*  
**James 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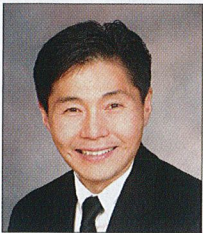
*Treasurer*  
**Minnie Lee**



*Seminar Director*  
**Kimberly Abe**



*Seminar Director*  
**Richard Wang**



*Public Relations Director*  
**Justin Oh**



*Public Relations Director*  
**Hanwook Jo**



*Publications Director*  
**Jinnie Kang**



*Publications Director*  
**Choi Joonsoon**



*Member Director*  
**Soh Yun Kang Park**



*Member Director*  
**William Kim**



*Communication Director*  
**Stephanie 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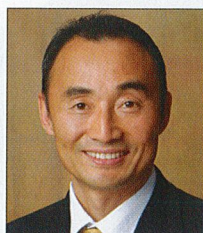
# 2016 - 2017 Committee Members



*Scholarship*  
**Charles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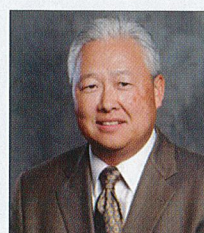
*Scholarship*  
**Frank Ba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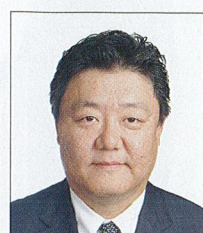
*Executive*  
**Byung Chan Ahn**



*Executive*  
**Christie C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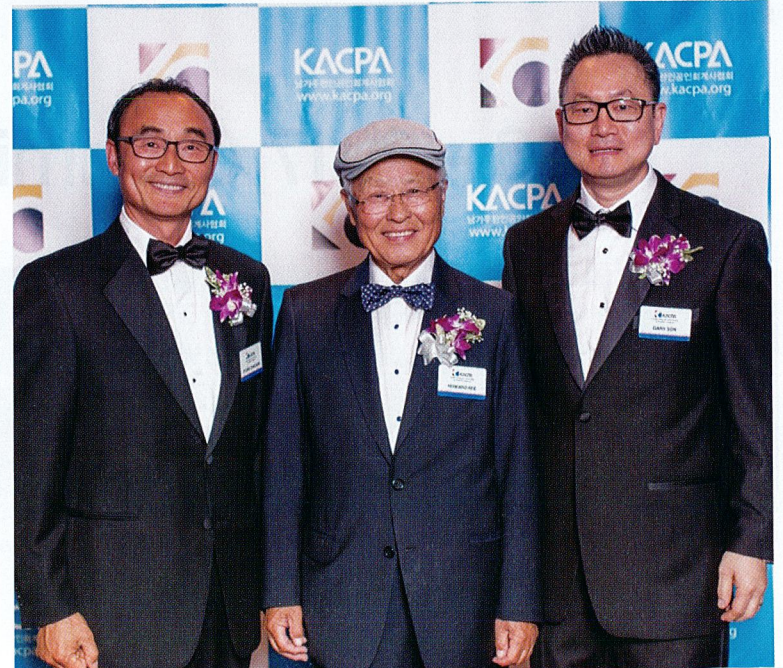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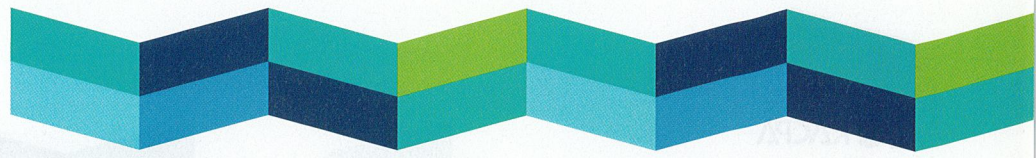
*Executive*  
**Steve Kang**



*Audit*  
**Albert Jang**

# 34대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이취임식





## 장학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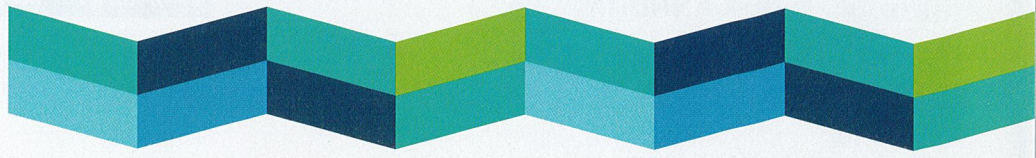


# 2016년 Bankers and CPAs Golf Tournament



## 이사회





#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Christmas Paty



# Professional Mixer



모든 투지나 불안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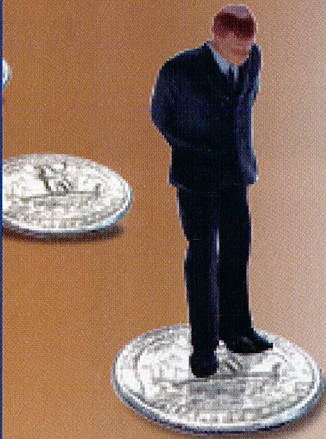
Allianz 인덱스연금은 \*지수형 연금플랜이라  
안심 할 수 있습니다!

Allianz: 미국내 15년간 Top #1 Sale

\*지수형 연금플랜이란?

Index지수가 올라가면 고객의 계좌는 증식되고  
Index 지수가 내려가면 고객의 계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안전한 연금플랜입니다.

CD, IRA, SEP, 401K, 연금 (Annuity)  
Rollover 하셔서 up to 20%까지  
BONUS 혜택을 받으세요!



20% 보너스 지금  
3년간 매번 입금시



원금보장+세금연기+보너스까지  
Index Annuity(인덱스 펀드연금)를 해야 하는 이유!

- 원금보장 ■ 세금연기 ■ 보너스 혜택 ■ 수익률 S&P 500 INDEX
- NO FEE ■ No PROBATION ■ Term: 5년 - 10년 (복리법)
- Fortune 500-세계최대회사 중 하나 ■ 등급: AA-Very Strong

재정 상담 Grace Kang  
대표 CA Lic. #OC02747

직통 (213)487-1477  
3600 Wilshire Blvd., #1614 Los Angeles, CA 90010  
gkangadvisor@gmail.com

AMSTAR  
ADVI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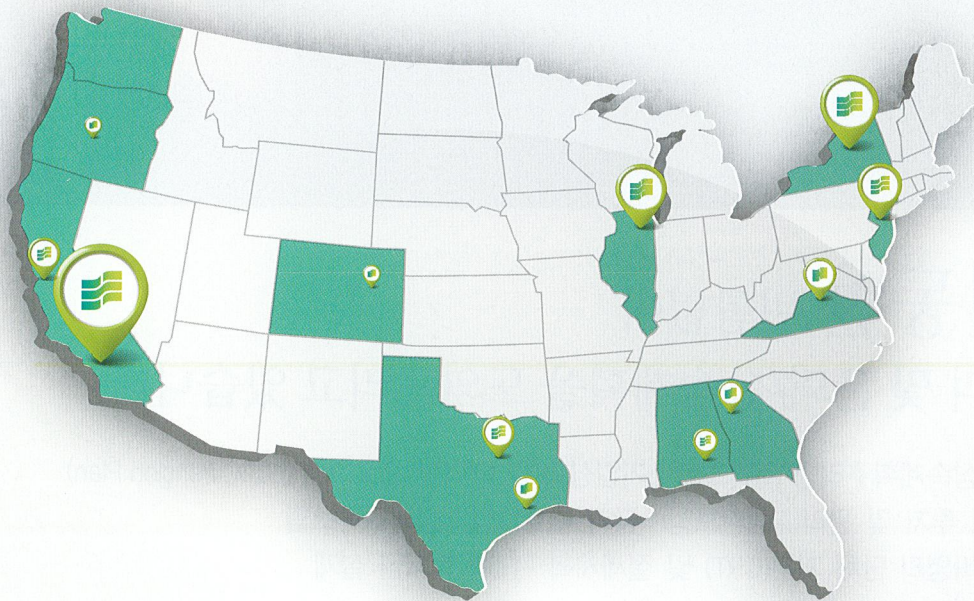
Investment Insurance Mortgage

Bankers.

Expe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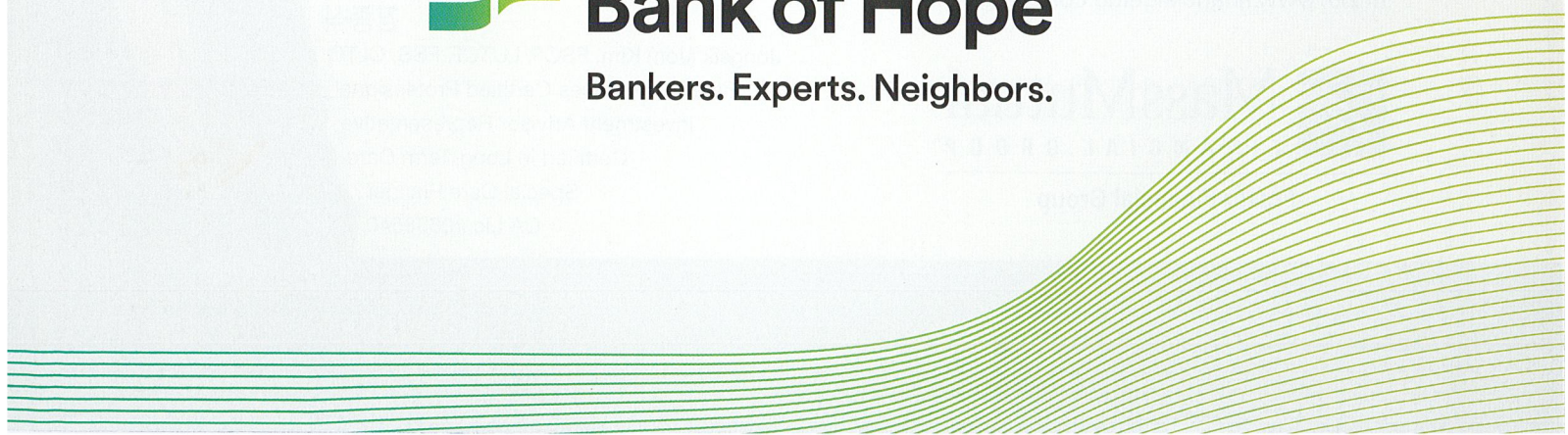
Neighbors.

**Elevate your  
Hope of financial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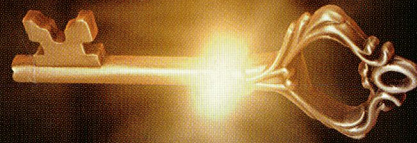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재정계획을 열어주는 프리미엄 재정전문서비스

재정설계 / 은퇴연금 및 상속계획 / 보험  
기업상속 및 직원 베니핏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고객과 기업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신뢰성있게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재정 보험 전문인  
- 김종식 (Jon Kim)



## 35년동안 변함없이 재정관리 및 은퇴/상속계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은퇴계획 ▶ 상속계획 ▶ 리빙 트러스트 ▶ 기업상속 및 베니핏 프로그램 (401K, Pension Plan)
- ▶ 뮤추얼 펀드 투자 및 관리 ▶ 생명보험 ▶ 장기 간호보험 ▶ 장애소득보험
- ▶ 건강보험 ▶ 비영리 단체 기부(CRT) 및 절세계획 ▶ 대학 학자금 설계
- ▶ Special Needs Trust & Conservatorshi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52-6222 / Cell: (213) 792-9100  
Email: jonkim@financialguide.com  
<http://www.financialguide.com/jong-kim>



Fraser Financial Group

**김종식**  
Jongsik (Jon) Kim, FSCP, LUTCF, FSS, CLTC  
Financial Services Certified Professional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Certified in Long-Term Care  
Special Care Planner  
CA Lic #0638640



Fraser Financial Group은 세계적 경영 다각화를 이루는 금융 서비스 그룹인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기업(매스뮤추얼)의 에이전시로서 광범위한 재정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매스뮤추얼의 기업목표는 재정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넓은 안목으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추어진 다양한 범위의 재정적 해결점을 오래도록 증진시키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입니다. 매스뮤추얼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재정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MassMutual Financial Group is a marketing name for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Mutual)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and sales representatives. 8383 Wilshire Blvd., Suite 600, Beverly Hills, CA 90211. (323)965-6300 Insurance offered through MassMutual and other fine companies.